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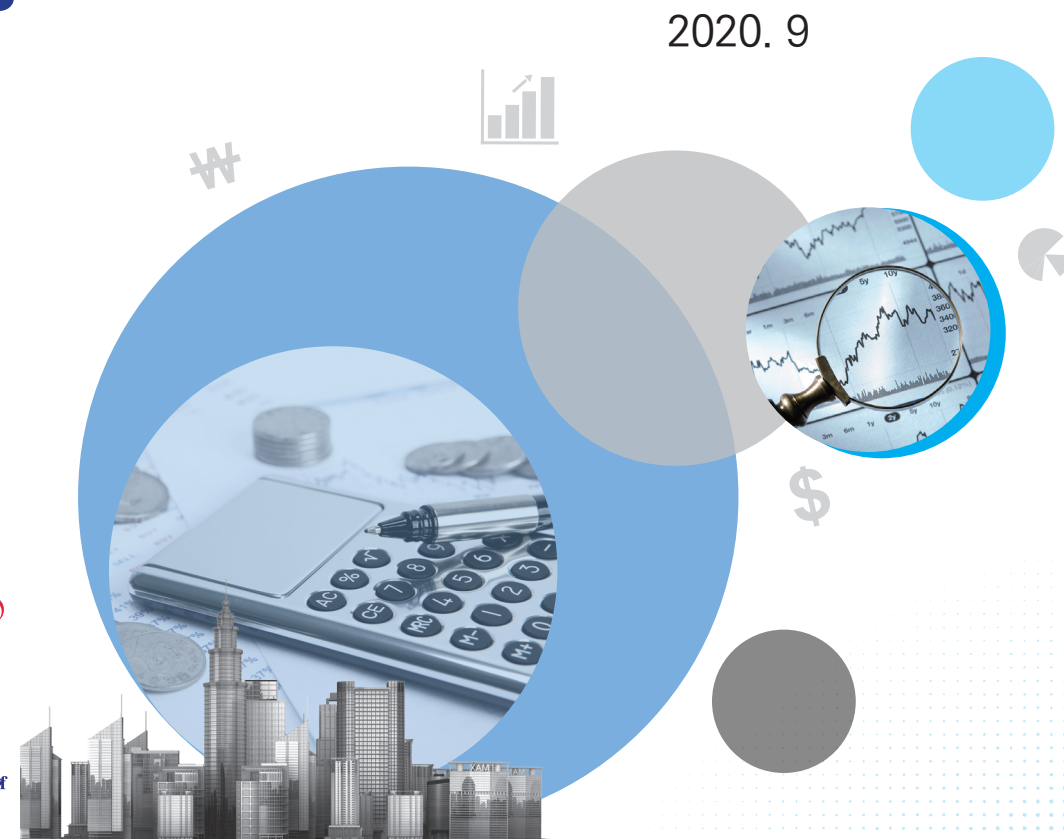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Ⅳ)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장
공동연구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1. 배경

- 본 연구는 조합법인, 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제72조)의 타당성,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협동조합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도 구분상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로 구분
 - 관련 지원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제도로 인식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율과세로 구성
 - 세무조정을 기부금, 접대비 등 9개 항목으로 축소·적용하여 당기순이익에 가깝게 과세하며 세무조정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춤
 - 저율과세제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따라 1~13%p 하향 적용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전망) 기준 3,597억원으로 법인세 감면 항목 중 상위 7위에 해당

<표 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단위: %, %p)

일반법인		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우대 폭	법인수 분포
~2억원	10	~20억원	9	~2억원	1	35.5
2억~200억원	20	20억원 초과	12	2억~200억원	8	64.5
200억~3,000억원	22			200억~3,000억원	10	0.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13	

주: 조합법인 법인 수 분포는 2018 귀속소득 기준

2. 현황

-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법인의 수는 과세연도 2018년을 기준으로 4,361개
 - 이 중 새마을금고가 법인 수 934개, 비중 21.4%로 가장 많은 조합법인 수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신협과 농협이 각각 19.9%와 14.7%의 비중을 차지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

〈표 2〉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4,558 (100.0)	4,560 (100.0)	4,502 (100.0)	4,397 (100.0)	4,418 (100.0)	4,361 (100.0)
농협	779 (17.1)	739 (16.2)	689 (15.3)	671 (15.3)	701 (15.9)	640 (14.7)
수협	21 (0.5)	6 (0.1)	6 (0.1)	6 (0.1)	6 (0.1)	6 (0.1)
신협	907 (19.9)	891 (19.5)	886 (19.7)	880 (20.0)	872 (19.7)	868 (19.9)
새마을금고	1,084 (23.8)	1,170 (25.7)	1,131 (25.1)	1,094 (24.9)	1,134 (25.7)	934 (21.4)
산림조합	70 (1.5)	52 (1.1)	52 (1.2)	37 (0.8)	43 (1.0)	34 (0.8)
소비자생협	58 (1.3)	42 (0.9)	35 (0.8)	38 (0.9)	23 (0.5)	19 (0.4)
기타조합 ¹⁾	1,639 (36.0)	1,660 (36.4)	1,703 (37.8)	1,671 (38.0)	1,639 (37.1)	1,860 (42.7)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등락을 보이지만 2013년 대비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은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 이는 대체적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
 - 평균 수입금액이 높은 유형은 수입금액 100억 초과 법인 비중이 높았던 농협과 수협

<표 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126.9	127.3	125.2	126.4	132.4	144.8
	0~20억원 이하	5.8	6.9	7.3	7.7	7.4	7.2
	20억~100억원 이하	46.7	45.7	45.6	45.6	46.3	46.9
	100억원 초과	376.3	371.4	363.9	362.5	371.4	387.1
농협	계	342.5	328.8	339.7	330.0	338.4	396.4
	0~20억원 이하	3.8	2.9	4.8	5.4	7.4	8.8
	20억~100억원 이하	79.9	77.6	74.4	76.1	78.0	76.9
	100억원 초과	377.1	368.7	374.0	365.8	369.3	435.9
수협	계	358.2	205.2	433.4	402.9	459.9	466.9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60.6	54.4	-	-	-	-
	100억원 초과	451.2	280.6	433.4	402.9	459.9	466.9
신협	계	36.2	36.6	36.9	36.5	39.8	45.0
	0~20억원 이하	10.0	9.9	10.0	9.7	9.7	9.2
	20억~100억원 이하	43.5	42.3	41.6	40.6	42.2	43.1
	100억원 초과	156.2	195.7	186.0	181.2	190.5	193.6
새마을금고	계	32.5	40.1	38.8	37.8	41.5	45.6
	0~20억원 이하	5.7	10.8	11.1	11.9	11.9	12.1
	20억~100억원 이하	41.3	41.5	41.9	41.3	41.7	43.9
	100억원 초과	179.9	164.6	157.3	176.5	184.7	179.7
산림조합	계	69.6	67.6	66.4	66.5	68.1	71.2
	0~20억원 이하	0.0	0.9	-	-	-	-
	20억~100억원 이하	62.9	62.4	60.3	60.1	62.2	64.2
	100억원 초과	121.7	109.8	123.0	119.4	146.6	143.1
소비자생활협	계	63.1	94.0	51.3	103.3	70.1	87.8
	0~20억원 이하	6.8	6.9	8.9	5.7	6.3	4.4
	20억~100억원 이하	45.3	51.0	48.2	56.5	56.7	64.9
	100억원 초과	429.5	409.7	171.9	448.7	167.1	207.9
기타조합 ¹⁾	계	138.8	150.2	143.9	150.9	157.8	155.4
	0~20억원 이하	4.0	4.0	4.4	4.6	4.3	4.7
	20억~100억원 이하	50.2	49.8	51.6	51.8	53.3	49.9
	100억원 초과	417.3	416.9	394.3	391.9	417.6	391.9

주: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흑자를 기록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6억원 수준에서 2018년 1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표 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6.16	6.49	6.78	7.15	8.23	9.90
	0~20억원 이하	1.92	1.41	1.15	1.07	1.20	1.19
	20억~100억원 이하	3.63	4.33	4.18	4.04	4.69	5.29
	100억원 초과	12.97	13.66	14.62	15.99	18.14	21.49
농협	계	11.63	11.79	13.23	14.40	15.61	21.29
	0~20억원 이하	1.68	1.90	2.67	0.83	0.51	1.05
	20억~100억원 이하	3.28	3.81	3.25	3.46	3.88	3.95
	100억원 초과	12.68	13.01	14.46	15.84	16.98	23.25
수협	계	10.21	4.28	17.37	14.63	24.26	27.18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2.22	2.47	-	-	-	-
	100억원 초과	12.35	5.19	17.37	14.63	24.26	27.18
신협	계	3.29	3.42	3.82	4.34	5.31	6.27
	0~20억원 이하	1.29	1.17	1.22	1.22	1.22	1.36
	20억~100억원 이하	3.76	3.82	4.05	4.39	4.79	5.30
	100억원 초과	11.08	14.97	17.07	21.33	27.39	28.03
새마을금고	계	5.07	5.85	5.19	4.51	6.35	7.01
	0~20억원 이하	3.55	2.04	1.54	1.53	1.95	1.66
	20억~100억원 이하	4.35	5.35	4.87	4.42	5.21	6.06
	100억원 초과	23.65	26.91	22.96	23.10	37.03	31.82
산림조합	계	2.66	3.49	3.97	3.10	3.38	3.30
	0~20억원 이하	-	0.81	-	-	-	-
	20억~100억원 이하	2.16	2.65	3.36	2.78	3.19	2.96
	100억원 초과	5.64	8.48	8.70	5.48	5.76	6.31
소비자생활협	계	1.66	1.47	0.96	0.34	1.24	0.72
	0~20억 이하	0.24	0.35	0.57	0.10	0.83	0.37
	20억~100억 이하	0.78	1.63	1.01	0.57	1.42	0.57
	100억 초과	7.80	2.59	2.25	0.32	1.51	1.47
기타조합 ¹⁾	계	5.61	6.14	6.52	7.23	7.76	8.95
	0~20억원 이하	1.19	1.20	0.88	0.74	0.77	0.91
	20억~100억원 이하	2.81	3.16	3.30	3.22	3.85	4.56
	100억원 초과	12.67	12.88	13.68	15.28	16.25	18.17

주: 1. 흑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익성 개선에서 기인
 - 특히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2013년 13억원 수준에서 2018년 21억원 수준으로 큰 폭 증가
 -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3억 6천만원에서 2018년 5억 3천만원으로 상승
 -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수입금액 0~20억원의 영세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2억원 수준에서 2018년 1억원 수준으로 감소 추세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은 2013년 4.3%에서 2018년 6.4%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
- 비록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등락을 보이지만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상승이 전체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상승을 견인
 - 2013~2018년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7.6%에서 11.3%, 3.4%에서 5.5%로 상승
 -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가(32.0 → 12.9%) 반등하여 2018년 15.1%로 회복
 - 당기순이익률은 수입금액 규모가 커감에 따라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는데, 영세조합법인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격차는 큰 편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간 당기순이익률 격차는 9.5%p(=15.1%-5.5%)
- 당기순이익률을 조합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생산자들과 직접 관계를 가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당기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은 10%가 넘는 수준으로, 2018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이 14.9%로 가장 높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당기순이익률은 4~5% 수준
 - 상품 유통에 참여하여 시장경쟁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생협의 경우 당기순이익률이 1%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음

〈표 5〉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단위: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4.28	4.67	4.83	5.09	5.68	6.35
	0~20억원 이하	31.98	18.64	14.65	12.86	14.58	15.10
	20억~100억원 이하	7.61	9.38	9.01	8.80	10.07	11.25
	100억원 초과	3.42	3.68	4.02	4.39	4.87	5.54
농협	계	3.36	3.56	3.88	4.31	4.61	5.30
	0~20억원 이하	67.16	91.46	61.03	12.36	6.90	13.79
	20억~100억원 이하	4.09	4.91	4.36	4.48	4.99	5.13
	100억원 초과	3.34	3.51	3.86	4.30	4.60	5.30
수협	계	2.68	2.09	4.01	3.63	5.27	5.82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3.15	4.54	-	-	-	-
	100억원 초과	2.66	1.85	4.01	3.63	5.27	5.82
신협	계	8.64	8.86	9.72	11.23	12.38	13.26
	0~20억원 이하	12.57	11.57	11.96	11.84	11.93	14.24
	20억~100억원 이하	8.64	8.97	9.64	10.83	11.22	12.20
	100억원 초과	7.08	7.57	9.18	11.77	14.37	14.48
새마을금고	계	14.61	14.05	12.31	11.30	14.78	14.89
	0~20억원 이하	69.32	19.08	13.73	12.91	16.26	13.69
	20억~100억원 이하	10.29	12.68	11.35	10.54	12.39	13.69
	100억원 초과	12.87	16.44	14.60	12.87	20.05	17.71
산림조합	계	3.66	5.04	5.75	4.55	4.96	4.45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3.35	4.16	5.41	4.54	5.16	4.47
	100억원 초과	4.64	7.72	7.08	4.59	3.93	4.41
소비자생협	계	1.82	1.18	2.01	0.20	1.81	0.70
	0~20억원 이하	2.79	4.78	5.13	1.23	13.98	4.44
	20억~100억원 이하	1.68	3.21	2.12	1.04	2.39	0.86
	100억원 초과	1.82	0.57	1.16	0.06	0.83	0.49
기타조합 ¹⁾	계	3.45	3.55	3.83	4.17	4.21	5.13
	0~20억원 이하	26.13	25.89	17.69	14.25	15.52	17.44
	20억~100억원 이하	5.51	6.33	6.22	6.22	7.15	9.18
	100억원 초과	3.00	3.11	3.48	3.89	3.87	4.65

주: 1. 후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0.0%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와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조합법인 유형 및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차이
 - 당기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협과 수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10.5%와 9.7%로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작은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8.9%로 가장 낮음

- 수입금액 규모별로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경우 9.1%, 100억 초과인 경우 10.3%

<표 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¹⁾
전체	10.0	10.5	9.7	9.5	9.5	8.9	8.9	10.0
0~20억원 이하	9.1	9.0	-	8.9	8.9	-	8.9	9.4
20억~100억원 이하	8.9	8.9	-	8.9	9.0	8.9	9.0	8.9
100억원 초과	10.3	10.5	9.7	10.2	10.3	8.9	8.9	10.2

주: 1. 평균 실효세율은 총 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조세특례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 조세지원의 타당성 관점에서 평가한 본 제도는 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며 조합원과의 연계성은 조합법인에 따라 차이
 - 조합법인 지원을 통한 정책목적 달성의 타당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인 공익성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며, 조합원 지원 목적에서는 일부 조합법인만 타당성 인정
 - 조합법인 활성화의 근본적 목적인 특정(산업) 활동 활성화라는 목적은 조합법인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그 타당성이 약함
 - 실질적인 지원대상인 조합원과의 연계는 조합법인 유형별로 차이
 - 1차산업 및 중소기업 기반 조합법인은 산업종사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거의 무의미
 - 결국 조합법인 활성화라는 목적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형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존재
 - 조합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합원 자격요건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연계가 없는 조합법인도 포함하여 지원 타당성 확보에 한계

<표 7> 조합법인의 목적 및 지원 대상 설정의 타당성

유형	(정책목적) 공익성	대상 설정 타당성		기타
		산업지원	대상 설정 특정화	
신협	×	×	×	
새마을금고	×	×	×	
농협	×	○(농업, 축산업)	○	농축산업인 대상
수협	×	○(수산업)	○	수산업인 대상
중기협동조합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대상
산림조합	×	○(임업)	○	임업인 대상
엽연초협동조합	×	△(농업)	○	연초경작자 대상, 담배는 추가 과세 중
소비자생활협	×	×	×	

주: 조합법인의 기본적 정책목적은 조합법인 활성화이며 공익성의 판단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음

- 지원수단으로서 조세특례는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나, 조합원 지원 측면에서는 조합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일반법인과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조세특례는 조합법인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 개인 및 자본의 참여 유인 제고
 - 또한 조합법인의 의사결정구조가 1인 1표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자본 보유량이 낮은 영세조합원의 참여 유인 높음
 - 특례대상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의사결정구조를 1인 1표로 규정

<표 8>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현황

(단위: %)

배당 규정	조합법인(2019)		
	조합법인	배당성향	이용실적 배당 비율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농업	44	56.5
	수협	39.9	47.6
	산림조합	26.9	19.8
	생협	n.a	n.a
이용실적 비례배당 병행	새마을금고	39.0	12.1
	신협	41.4	5.7
	중소기업협동	n.a	n.a
배당 관련 미규정	엽연초생산	n.a	n.a

주: 2019년 사업연도 전체기업 배당성향은 41.25%(코스피), 32.40%(코스닥)

자료: 『브릿지경제』, 「순이익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2020. 4. 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512>, 검색일자: 2020. 6. 10.

- 조합원 지원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직접적 지원인 배당성향,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은 제한적
 - 조합법인의 배당성향(26.9~44%)은 일반 상장기업(32.4~41.3%)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용실적 배당 비율도 농협, 수협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음
 - 개별 조합법인법상 최우선 배당으로 규정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 조세특례를 통한 조합법인 지원 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조합원 지원 제도는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로 운용 중
 - 조합법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공익법인, 중소기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 내포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으나, 개인소득세 보완을 통해 조정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외국은 지원대상을 조합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 반면 우리나라는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어 개인단계 소득세의 재분배기능 약화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재정사업은 3건(2020, 272억원) 존재하나 중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표 9> 주요국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국가	조합 지원		조합원 지원(손금산입)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이용실적 비례배당	출자금 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1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2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국	×	×	○	×
미국	×	×	○	○(농업)

주: 1. 일정 조건 농업협동조합은 면세
 2. 일정 조건 농림협동조합은 면세

- 조세특례 조합법인의 성과를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법인과 비교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유사 업종 및 유사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비교집단을 임의추출하여 분석
 - 2018년 기준 특례 조합법인 4,361개 중 2,418개 법인에 대해 비교법인 추출
 - 자료의 한계로 비교법인이 추출된 특례 조합법인의 비율은 49~58% 수준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20억원 이하인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이고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법인의 규모가 비교법인보다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비교법인의 35~7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법인으로 구성
 - 2018년 기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경우 비교법인의 126% 수준

<표 10>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

(단위: %)

과세표준/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미만	67	59	48	60	61	35
0~2억원 이하	44	50	44	52	47	42
2억~20억원 이하	66	72	77	83	73	71
20억원 초과	143	125	141	136	139	126
계	101	100	100	100	100	100

주: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비교법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특례법인의 순이익 창출 능력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비교법인의 45%로 낮은 수준
 - 특례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당기순이익의 상대비율 수준은 더 낮아짐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20억~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상대비율은 각각 72%, 56%, 45%

<표 11> 수입금액 규모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

(단위: %)

수입금액/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20억 이하	97	92	50	55	88	72
20억~100억 이하	42	41	41	49	46	56
100억 초과	42	36	34	29	35	44
계	44	38	35	31	37	45

주: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2.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회귀식을 이용하여 자산, 자본 등 기업 이질성을 통제한 후 비교법인과 조합법인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특례법인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향상에 부정적인 역할
 - 유사 업종 및 유사 수입금액 규모의 비교 법인에 비해 자산, 자본 등을 통제 후 수입 및 당기순이익 창출 능력이 낮게 나타나 조세특례의 효과성 의심
 - 다만 결손확률 및 당기순이익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 당기순이익률의 통계적 차이 없음은 수입금액 대비 비용지출 구조가 비교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법인의 지원활동 역시 크지 않음을 유추 가능

<표 12> 특례법인과 비특례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단위: 백만원, %)

과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	-6,519.7*** (1,090.3)	-5,249.1*** (1,572.5)	-6,637.4*** (974.0)	-7,343.0*** (1,249.2)	-8,228.6*** (1,382.8)
결손확률	-9.0 (5.4)	-4.6 (4.6)	-4.9 (5.3)	-3.9 (5.6)	-7.1 (4.8)
당기순이익	-960** (404)	-1,710** (806)	-2,184** (1,014)	-2,115** (1,002)	-1,714** (813)
당기순이익률	-1.1 (1.2)	-3.1 (2.7)	-3.6 (2.3)	-2.4 (2.3)	-1.4 (2.2)

주: 1. 비특례법인은 특례법인과 유사한 업종 및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법인으로 추출

2. 과세연도 2013년은 금융업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3.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자산의 로그값, 자본의 로그값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4.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5.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6. 괄호 안은 기업단위의 군집표준오차

7.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

- 2015년부터 적용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9 → 12%)은 특례법인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당기순이익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무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 법인세율 3%p 인상에 의해 과표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수입금액은 595억원 감소, 당기순이익 9억원 감소, 당기순이익률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13〉 2015년 세율인상 효과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세율인상 효과	-15,508 (14,151)	-59,547** (22,559)	-1,879** (791)	-908** (346)	-1.75** (0.78)	0.03 (1.54)
재무변수 통제		○		○		○

- 주: 1.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흑자법인을 기준으로 분석
 2. 특례법인과 유사한 업종 및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비특례법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추정
 3. 재무변수는 자산의 로그값과 자본의 로그값을 의미
 4. 금융업은 2013년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재무변수를 통제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5. 국제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업종중분류와 지역의 교차항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6.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7. 괄호 안은 기업단위의 군집표준오차
 8.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 결론적으로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는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법인(공익법인, 중소기업)에 비해 과다 지원 상태
 - 성장(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측면의 성과도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성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 조합원에 대한 지원 기능도 일반 상장기업과 유사한 배당성향과 비용지출 비율을 보여 배당금 및 서비스지원 기능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음

4. 결론 및 정책시사점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분석결과,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있으나 그 지원 수준은 외국과의 비교, 국내 다른 공익단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그 활동결과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세제상 혜택 제공
 -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이외에도 당기순이익과세를 통해 세무조정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합법인 자체를 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개별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과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움
 - 외국은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형태이므로, 법인세율 수준의 지원(즉 법인단계 세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이 이루어짐
 -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법인세 부담이 남아 있으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짐
- 성장(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측면의 성과는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조세특례가 법인 성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 조합원에 대한 지원기능도 일반 상장기업과 유사한 배당성향과 비용지출비율을 보여 크게 다르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제도는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만약 동 제도를 외국과 같이 조합원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경우 보다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제도를 조정할 필요
 - 조합법인 지원제도인 당기순이익과세, 저율과세를 폐지하고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 면제 필요
 - 조합원에게 조합법인의 소득이 법인세 부담없이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을 지원하고 조합원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 개인소득자 간 과세 형평성 유지
 - 현행 조합법인 관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폐지
 - 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구조에 대한 왜곡은 방지
 - 현재와 같은 조합법인 활동 지원 목적을 유지할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배제 등 고려 가능
 -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되,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과세함으로써 시장왜곡 축소 가능
-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당기순이익과세를 (점진) 폐지하고 저율과세로 지원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분포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에도 허용치 않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할 필요성 낮음
- 당기순이익과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다음의 세무조정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전병목·류덕현, 2017)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익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당사유 없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등

목 차

I. 연구의 배경	21
II. 제도 운영 현황	27
1. 제도 개요	29
2. 제도 운영 현황	34
III.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65
1. 미국	67
2. 일본	68
3. 영국	69
4. 독일	70
5. 프랑스	70
6. 이탈리아	71
7. 소결	72
IV. 타당성 분석	91
1.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93
2. 정책수단의 적절성	104
가. 조합법인의 활성화	104
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107
다. 공익적 활동	111
3. 지원 수준의 적절성	114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20

V. 효과성 분석	123
1. 비특례법인과 비교분석	125
가. 자료	125
나. 분석방법 및 결과	131
2. 세율인상 효과 분석	136
3. 조합법인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39
가.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투입산출분석	139
나. 분석결과	144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153
참고문헌	163
부 록	165

표 목 차

<표 II-1>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9
<표 II-2>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30
<표 II-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유형 구분	31
<표 II-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32
<표 II-5> 제도 연혁	33
<표 II-6> 법인세 비과세 감면항목 상위 20개	34
<표 II-7>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35
<표 II-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37
<표 II-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39
<표 II-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42
<표 II-1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43
<표 II-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45
<표 II-13>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47
<표 II-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49
<표 II-15>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50
<표 II-1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51
<표 II-1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53
<표 II-1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당기순손익률	55
<표 II-1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18년 기준)	56
<표 II-2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감면금액(추정)	58
<표 II-2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감면금액(추정)	59
<표 II-2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61
<표 II-2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62
<표 II-24> 조합법인 유형별 배당 추이	64
<표 III-1> 주요국의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73

<표 III-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74
<표 IV-1>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개별법상 설립 취지 및 사업내용	98
<표 IV-2>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요건	101
<표 IV-3> 조합법인의 목적 및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	104
<표 IV-4> 개별 협동조합의 의결권 행사구조	106
<표 IV-5> 조합법인 유형별 조합원 지원	107
<표 IV-6>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이익금 처분 규정	109
<표 IV-7>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규정	111
<표 IV-8>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현황	112
<표 IV-9> 중소기업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분포(2018)	113
<표 IV-10> 주요국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방향	115
<표 IV-11> 협동조합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116
<표 IV-12> 세제지원 대상 법인별 사업대상과 조세지원제도	117
<표 IV-13>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21
<표 V-1> 특례법인 수와 비교법인 수	126
<표 V-2>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127
<표 V-3>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 ..	128
<표 V-4>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결손법인 수	128
<표 V-5> 수입금액 규모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 ..	129
<표 V-6>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 ..	130
<표 V-7> 수입금액 규모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 ..	130
<표 V-8>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 ..	131
<표 V-9>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135
<표 V-10> 세율인상 효과 분석	138
<표 V-11>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140
<표 V-12>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145
<표 V-13>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별 과세특례 조합법인 비중	146
<표 V-14>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148

<표 V-15>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1	150
<표 V-16>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2	151
<표 V-17> 유발계수 종합	152
<표 VI-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155
<표 VI-2> 조합법인의 목적 및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	156
<표 VI-3>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현황	157
<표 VI-4> 주요국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158
<표 VI-5> 특례법인과 비특례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159
<표 VI-6> 2015년 세율 인상 효과 분석	159

I. 연구의 배경



I. 연구의 배경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형태의 조합법인들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법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 동 규정을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편제상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부분에 포함
 - 동 제도는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항목의 세무조정 추가(2000. 12. 29., 2013. 1. 1.) 등 제도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변화
 - 과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서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공익사업 지원 조세특례 구분에 속하여 있음

- 동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경우,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산업 종사자와 신용 및 판로 접근이 어려운 자영 및 중소기업자 등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
 - 조합법인의 활성화는 조합원 또는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
 - 지원이 필요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조합법인은 전통산업 기반의 농협, 수협,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산림조합 등과 함께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 및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 이러한 조합법인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납세협력 비용과 세부담을 낮춰 주는 두 가지 제도적 지원을 포함
 - 이는 일반 영리법인에 비해 규모가 작아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서민 관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

- 구체적으로 ① 세무조정 범위 축소하여 적용하고 ② 세율 측면에서도 일반법인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 조합법인 등이 주로 소규모로 조직되어, 대형화된 영리법인에 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에 따른 행정비용 부담이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낮은 세율의 적용은 소규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어 조합법인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소속 조합원과 거래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심층평가의 대상이므로, 평가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19년(전망) 기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5,597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심층평가 시행기준 30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당연 심층평가 대상
 - 동 제도는 2019년 기준 법인세 비과세·감면 항목 중 그 규모가 7위에 해당하는 큰 제도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는 제도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정으로서, 조세지출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것
 - 실제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적

-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심층평가에서 검토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4항과 동법 시행령(제135조 제5항)을 통해 자세히 규정
 - 「조특법」 제142조에 따르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시행토록 규정
 - 「조특법 시행령」 제135조는 이를 보완하여 세 가지로 자세히 규정
 -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특례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
 - 정책목적과 대상 및 수단의 적절성 등 조세특례 타당성에 대한 분석
 -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 본 연구는 심층평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의 방법론과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 조세특례 대상 조합법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유사 법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분석
 -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은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지원수단의 적절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
 - 정책목적에 대한 판단, 정책목적에 맞는 대상자의 설정, 조합법인과 정책대상자와의 연계성, 조세지원의 적절성 등 평가
 -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2017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 등 과거 제도개선 사례를 참고

Ⅱ. 제도 운영 현황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어 주는 제도
 - 첫째, 복잡한 세무조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무조정 항목을 다음의 9개 항목으로 축소하여 적용
 - ①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 ② 기부금에 대한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4조): 규정되지 않은 기부금과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경우 각 손금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지출증빙을 갖춘 일정 한도 이내의 접대비만 손금산입
 -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에 따른 한도의 합으로 구성(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50%)

〈표 II -1〉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월수)/12
수입금액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 ④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8조에서 규정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및 교육·훈련비, 법인 외의 자와 공동 운영 또는 경영 손비, 업무 관련 적은 경비 등에 대해 손금불산입

- ⑤ 업무무관 비용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그 외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 ⑥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 제26조의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른 비용 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만 손금산입
 - ⑦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규정 이외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 등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 ⑧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된 해당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5%를, 퇴직급여 충당금의 누적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
 - ⑨ 대손충당금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에서 제38조에 이르는 손금의 계산 및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 중 일부(9개)만을 적용함으로써 회계기준상 당기순이익에 가까운 개념으로 과세체계를 운용하는 결과
- 복잡한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를 위한 전문가 활용 등 비용부담을 경감
 - 또한 조합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음

<표 II -2>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단위: %, %p)

일반법인		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우대 폭
~2억원	10	~20억원	9	~2억원	1
2억~200억원	20	20억원 초과	12	2억~200억원	8
2억~3,000억원	22			2억~3,000억원	10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13

- 둘째,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낮추어 줌
 - 기본 법인세율 10%/20%/22%/25% 대신 9%/12%(20억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
 - 이러한 법인세율 체계는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계감면 폭은 증가하는 구조로 조합법인의 성장 유인에 긍정적

- 당기순이익에서 9가지 항목만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이용하는 지원대상 조합법인 유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8개 유형의 조합법인은 다시 1차산업 부문 생산자조합, 서민금융사업 조합, 일반 생산활동 조합, 소비자활동 조합으로 구분
 - 전통적인 지원대상 업종으로 구분되어 온 1차산업 부문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동 부문 종사자로 구성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등을 포함

〈표 II -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유형 구분

구분	조합법인
1차산업 종사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서민금융사업 참여자	신협 및 새마을금고
소규모 생산단체 참여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활동단체 참여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서민금융사업 지원을 위해 신협 및 새마을금고, 소규모 생산단체 참여자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활동 지원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분 가능
 - 1차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법인들과 달리 다른 조합법인들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8년 2,964억원이며, 이는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합법인의 활성화 및 대형화 등은 법인세 과세특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

〈표 II -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e ¹⁾	2020e ¹⁾
법인세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51	2,964	3,597	3,741
계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51	2,964	3,597	3,741

주: 1) e는 전망치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1998년 이전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서 시작되었으며 1998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로 발전
 - 초기 적용대상은 주로 1차산업 종사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괄하고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 시행
 - 적용세율도 10% 단일세율
 - 이후 2001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추가되었음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서 세무조정 항목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2000년 기부금·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키 시작하여, 2013년 6개 항목을 추가적으로 적용
- 2017년에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조합법인, 즉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 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무조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 기존의 8개 항목 세무조정, 낮은 세율 적용체계가 단순 3년 연장

<표 II -5> 제도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8년 이전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운영 · 세율 10% 적용
1998. 12. 28.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 단일 세율: 12% · 대상 조합법인: 신탁 및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중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 농지개량조합
2000. 12. 29.	- 과세방법 보완: 일부 항목 세무조정(기부금·접대비 한도초과액)
2001. 12. 29.	- 특례대상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
2006. 12. 30.	- 적용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수협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추가 · 단위수협이 제공받은 재무구조개선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해당 이자수입을 비용으로 계상할 때까지 과세이연
2008. 12. 26.	- 적용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세율 인하: 12 → 9%
2013. 1. 1.	- 적용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과세방법 보완: 세무조정 대상 확대(기부금·접대비+업무무관 경비·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4. 12. 23.	- 적용기한 연장: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 9 → 12%
2015. 12. 15.	- 합병기업에 대한 적용례 추가 · 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 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2016. 12. 20.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자료: 전병목·류덕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조합법인 등의 성장과 함께 조세지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전망) 기준 법인세 조세지출 항목 중 상위 7위에 해당하는 항목
 - 상위 1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고용, 투자 등 특정 경제행위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행위가 아닌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한 제도 중 2위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가 경제행위 유도 목적이 아닌 자격기준 조세지출 중 가장 큰 항목
 - 조세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표 II -6〉 법인세 비과세 감면항목 상위 20개

(단위: 억원)

항목	2018	2019(전망)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2,998	21,92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0,805	9,482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7,270	7,77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7,597	6,570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1,398	5,546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5,16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964	3,59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	1,57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60	1,20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29	985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815	845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530	786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55	652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25	487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254	31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특례(제4~9항)	27	29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73	258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18	218
소계	70,932	67,686
법인세 감면 총계	73,035	69,657

주: 2019년 운용 중인 제도 기준이며, 제도가 종료된 후 경과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을 포함하면 2019 (전망) 총 규모는 7조 3,704억원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7.

2. 제도 운영 현황¹⁾

-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법인의 수는 과세연도 2018년을 기준으로 4,361개
 - 이 중 새마을금고가 법인 수 934개, 비중 21.4%로 가장 많은 숫자와 비중을 보임
 - 뒤이어 신협과 농협이 각각 19.9%와 14.7%의 비중을 차지

1) 본 보고서에서는 귀속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신고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고기준으로 작성 시, 각 신고연도별로 2개년 이상의 귀속연도별 자료가 관측되는 법인들이 존재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낮은 수준
- 과세특례제도 적용을 받았으나 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조합법인(즉 기타 조합)은 1,860개로 42.7%를 차지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등락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3년 4,558개에서 2016년 4,397개로 감소하였다가 2017년 소폭 증가한 후 2018년 4,361개로 감소
 - 2013~2018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의 감소폭은 197개, 4.3% 수준
 - 2016~2017년 증가분은 농협과 새마을금고 수 증가에 기인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의 감소 추세는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발생
 -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유형은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으로 각각 71.4%, 51.4%, 67.2% 감소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감소폭은 각각 17.8%, 4.3%, 13.8%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

<표 II -7>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4,558 (100.0)	4,560 (100.0)	4,502 (100.0)	4,397 (100.0)	4,418 (100.0)	4,361 (100.0)
농협	779 (17.1)	739 (16.2)	689 (15.3)	671 (15.3)	701 (15.9)	640 (14.7)
수협	21 (0.5)	6 (0.1)	6 (0.1)	6 (0.1)	6 (0.1)	6 (0.1)
신협	907 (19.9)	891 (19.5)	886 (19.7)	880 (20.0)	872 (19.7)	868 (19.9)
새마을금고	1,084 (23.8)	1,170 (25.7)	1,131 (25.1)	1,094 (24.9)	1,134 (25.7)	934 (21.4)
산림조합	70 (1.5)	52 (1.1)	52 (1.2)	37 (0.8)	43 (1.0)	34 (0.8)
소비자생협	58 (1.3)	42 (0.9)	35 (0.8)	38 (0.9)	23 (0.5)	19 (0.4)
기타조합 ¹⁾	1,639 (36.0)	1,660 (36.4)	1,703 (37.8)	1,671 (38.0)	1,639 (37.1)	1,860 (42.7)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새마을금고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가 1,084개에서 1,134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 934개로 큰 폭으로 감소
 - 기타 조합으로 분류된 조합법인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의 수는 2013년 1,639개에서 2018년 1,860개로 증가하였고, 비중도 36.0%에서 42.7%로 증가
-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20억원 이하의 영세조합법인은 29.2%,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38.6%,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은 32.2% 차지
- 농협과 수협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높음
 - 2018년 기준 농협은 89.5%, 수협은 100% 수준
 -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 비중이 높음(2018년 기준)
 - 산림조합의 경우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이 90% 이상 차지하였고, 100억 초과 법인이 8.8% 비중 차지
 - 나머지 두 유형의 조합법인은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약 50~60%대 수준이고, 0~2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20~30%대 수준
 - 소비자생협의 경우 2018년 기준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의 수입금액 규모별 비중은 모두 30% 대로 고른 분포
 - 기타조합은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비중이 각각 37.5%와 35.8%로 비슷한 수준이고,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 비중은 26.7%
- 2013년 이후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
- 이러한 변화는 농협을 제외한 조합법인 유형에서 대체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가 증가한 것에 기인
 - 수협은 2014년 이후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6개만 남고, 100억원 이하 수협법인들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
 - 신협의 경우 0~20억원 이하와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감소(각각 346→307개, 517 → 481개),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수는 증가(44 → 80개)

<표 II -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4,558	4,560	4,502	4,397	4,418	4,361
	0~20억원 이하	1,652 (36.2)	1,471 (32.3)	1,503 (33.4)	1,460 (33.2)	1,403 (31.8)	1,273 (29.2)
	20억~100억원 이하	1,591 (34.9)	1,771 (38.8)	1,693 (37.6)	1,641 (37.3)	1,677 (38.0)	1,685 (38.6)
	100억원 초과	1,314 (28.8)	1,317 (28.9)	1,306 (29.0)	1,296 (29.5)	1,338 (30.3)	1,403 (32.2)
농협	계	779	739	689	671	701	640
	0~20억원 이하	14 (1.8)	13 (1.8)	17 (2.5)	8 (1.2)	10 (1.4)	18 (2.8)
	20억~100억원 이하	73 (9.4)	85 (11.5)	58 (8.4)	73 (10.9)	62 (8.8)	49 (7.7)
	100억원 초과	692 (88.8)	641 (86.7)	614 (89.1)	590 (87.9)	629 (89.7)	573 (89.5)
수협	계	21	6	6	6	6	6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5 (23.8)	2 (33.3)	-	-	-	-
	100억원 초과	16 (76.2)	4 (66.7)	6 (100.0)	6 (100.0)	6 (100.0)	6 (100.0)
신협	계	907	891	886	880	872	868
	0~20억원 이하	346 (38.1)	347 (38.9)	352 (39.7)	355 (40.3)	343 (39.3)	307 (35.4)
	20억~100억원 이하	517 (57.0)	504 (56.6)	486 (54.9)	473 (53.8)	468 (53.7)	481 (55.4)
	100억원 초과	44 (4.9)	40 (4.5)	48 (5.4)	52 (5.9)	61 (7.0)	80 (9.2)
새마을금고	계	1,084	1,170	1,131	1,094	1,134	934
	0~20억원 이하	475 (43.8)	328 (28.0)	350 (30.9)	370 (33.8)	330 (29.1)	244 (26.1)
	20억~100억원 이하	556 (51.3)	773 (66.1)	718 (63.5)	672 (61.4)	737 (65.0)	621 (66.5)
	100억원 초과	53 (4.9)	69 (5.9)	63 (5.6)	52 (4.8)	67 (5.9)	69 (7.4)
산림조합	계	70	52	52	37	43	34
	0~20억원 이하	1 (1.4)	1 (1.9)	-	-	-	-
	20억~100억원 이하	60 (85.7)	44 (84.6)	47 (90.4)	33 (89.2)	40 (93.0)	31 (91.2)
	100억원 초과	9 (12.9)	7 (13.5)	5 (9.6)	4 (10.8)	3 (7.0)	3 (8.8)
소비자생활협	계	58	42	35	38	23	19
	0~20억원 이하	33 (56.9)	16 (38.1)	13 (37.1)	19 (50.0)	7 (30.4)	7 (36.8)
	20억~100억원 이하	19 (32.8)	19 (45.2)	17 (48.6)	12 (31.6)	10 (43.5)	6 (31.6)
	100억원 초과	6 (10.3)	7 (16.7)	5 (14.3)	7 (18.4)	6 (26.1)	6 (31.6)
기타조합 ¹⁾	계	1,639	1,660	1,703	1,671	1,639	1,860
	0~20억원 이하	783 (47.8)	766 (46.1)	771 (45.3)	708 (42.4)	713 (43.5)	697 (37.5)
	20억~100억원 이하	361 (22.0)	344 (20.7)	367 (21.6)	378 (22.6)	360 (22.0)	497 (26.7)
	100억원 초과	494 (30.1)	549 (33.1)	565 (33.2)	585 (35.0)	566 (34.5)	666 (35.8)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법인의 수는 2013년 475개에서 2018년 244개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20억~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법인의 수는 증가(각각 556 → 621개, 53 → 69개)
 - 소비자생협은 2013년 수입금액 0~20억원 법인의 비중이 54.2%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면서 2018년 비중이 36.8%에 이르렀고,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은 증가(10.3% → 31.6%). 20억~100억원 이하 규모 법인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비중 유지(32.8 → 31.6%)
 - 산림조합법인 수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의 감소세가 다른 수입금액 규모에 비해 느려 그 비중이 증가(85.7 → 91.2%)
-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타조합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변화도 전체 조합법인의 분포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
- 기타조합의 경우 영세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0~2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이 전체 조합법인 수의 80%에 가까워 소규모 법인이 대부분
- 조합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은 2억~20억원 이하 구간으로, 그 비중이 2013년 46.6%에서 2018년 52.8%로 상승 추세
-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
 - 과세표준 2억~20억원 구간에서 조합법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형은 조합법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임
 - 반면 농협은 과세표준 2억~20억원 조합법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경우 과세표준 2억~20억원 구간의 조합법인 수가 감소하면서 비중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양상
-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비중은 2억~20억원 이하 구간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30%선을 유지하다 2018년에 26.4%로 감소
- 소비자생협이 다른 유형에 비해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비중이 40~50%대로 높은 편

<표 II -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4,558	4,560	4,502	4,397	4,418	4,361
	0원 미만	709 (15.56)	582 (12.76)	633 (14.06)	592 (13.46)	464 (10.50)	397 (9.10)
	0~2억원 이하	1,445 (31.70)	1,409 (30.90)	1,409 (31.30)	1,442 (32.80)	1,309 (29.63)	1,150 (26.37)
	2억~20억원 이하	2,124 (46.60)	2,262 (49.61)	2,133 (47.38)	2,022 (45.99)	2,234 (50.57)	2,303 (52.81)
	20억~200억원 이하	278 (6.10)	306 (6.71)	326 (7.24)	339 (7.71)	409 (9.26)	508 (11.65)
	200억원 초과	2 (0.04)	1 (0.02)	1 (0.02)	2 (0.05)	2 (0.05)	3 (0.07)
농협	계	779	739	689	671	701	640
	0원 미만	24 (3.08)	23 (3.11)	10 (1.45)	17 (2.53)	8 (1.14)	12 (1.88)
	0~2억원 이하	45 (5.78)	54 (7.31)	46 (6.68)	39 (5.81)	37 (5.28)	27 (4.22)
	2억~20억원 이하	576 (73.94)	538 (72.80)	494 (71.70)	473 (70.49)	486 (69.33)	417 (65.16)
	20억~200억원 이하	134 (17.20)	124 (16.78)	138 (20.03)	141 (21.01)	169 (24.11)	181 (28.28)
	200억원 초과	-	-	1 (0.15)	1 (0.15)	1 (0.14)	3 (0.47)
수협	계	21	6	6	6	6	6
	0원 미만	2 (9.52)	-	-	1 (16.67)	-	-
	0~2억원 이하	1 (4.76)	2 (33.33)	1 (16.67)	2 (33.33)	1 (16.67)	-
	2억~20억원 이하	14 (66.67)	4 (66.67)	2 (33.33)	2 (33.33)	3 (50.00)	3 (50.00)
	20억~200억원 이하	4 (19.05)	-	3 (50.00)	1 (16.67)	2 (33.33)	3 (50.00)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907	891	886	880	872	868
	0원 미만	182 (20.07)	117 (13.13)	109 (12.30)	122 (13.86)	98 (11.24)	68 (7.83)
	0~2억원 이하	355 (39.14)	386 (43.32)	356 (40.18)	360 (40.91)	340 (38.99)	281 (32.37)
	2억~20억원 이하	361 (39.80)	374 (41.98)	404 (45.60)	372 (42.27)	394 (45.18)	470 (54.15)
	20억~200억원 이하	9 (0.99)	14 (1.57)	17 (1.92)	26 (2.95)	40 (4.59)	49 (5.65)
	200억원 초과	-	-	-	-	-	-

〈표 II -9〉의 계속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새마을금고	계	1,084	1,170	1,131	1,094	1,134	934
	0원 미만	170 (15.68)	106 (9.06)	162 (14.32)	152 (13.89)	82 (7.23)	54 (5.78)
	0~2억원 이하	305 (28.14)	310 (26.50)	333 (29.44)	385 (35.19)	313 (27.60)	216 (23.13)
	2억~20억원 이하	569 (52.49)	698 (59.66)	594 (52.52)	525 (47.99)	687 (60.58)	598 (64.03)
	20억~200억원 이하	40 (3.69)	56 (4.79)	42 (3.71)	32 (2.93)	51 (4.50)	66 (7.07)
	200억원 초과	-	-	-	-	1 (0.09)	-
산림조합	계	70	52	52	37	43	34
	0원 미만	16 (22.86)	7 (13.46)	8 (15.38)	3 (8.11)	3 (6.98)	5 (14.71)
	0~2억원 이하	23 (32.86)	12 (23.08)	10 (19.23)	10 (27.03)	9 (20.93)	9 (26.47)
	2억~20억원 이하	31 (44.29)	33 (63.46)	34 (65.38)	24 (64.86)	31 (72.09)	20 (58.82)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58	42	35	38	23	19
	0원 미만	20 (34.48)	15 (35.71)	15 (42.86)	17 (44.74)	5 (21.74)	11 (57.89)
	0~2억원 이하	30 (51.72)	17 (40.48)	17 (48.57)	20 (52.63)	13 (56.52)	7 (36.84)
	2억~20억원 이하	7 (12.07)	10 (23.81)	3 (8.57)	1 (2.63)	5 (21.74)	1 (5.26)
	20억~200억원 이하	1 (1.72)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1,639	1,660	1,703	1,671	1,639	1,860
	0원 미만	295 (18.00)	314 (18.92)	329 (19.32)	280 (16.76)	268 (16.35)	247 (13.28)
	0~2억원 이하	686 (41.85)	628 (37.83)	646 (37.93)	626 (37.46)	596 (36.36)	610 (32.80)
	2억~20억원 이하	566 (34.53)	605 (36.45)	602 (35.35)	625 (37.40)	628 (38.32)	794 (42.69)
	20억~200억원 이하	90 (5.49)	112 (6.75)	126 (7.40)	139 (8.32)	147 (8.97)	209 (11.24)
	200억원 초과	2 (0.12)	1 (0.06)	-	1 (0.06)	-	-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탁은 30~40%대,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은 20~30%대로 나타났고 농협은 10% 미만 수준
 - 2018년의 비중 하락은 신탁,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의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와 비중 하락에 기인
 - 2015년부터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조합법인의 비중은 2013년 6.1%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 11.7% 수준에 이룸
 -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구간에서 농협과 수협의 조합법인 비중은 각각 28.7%와 50.0%(2018년 기준)로 다른 조합법인 유형에 비하여 높은 수준
 -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조합법인 비중의 추세는 농협과 수협뿐 아니라 신탁, 새마을금고도 상승 추세
 -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2018년 기준 그 수와 비중이 각각 397개와 9.1%로 낮지 않은 수준
 - 음(-)의 과세표준을 가진 조합법인 비중은 소비자생협의 경우 가장 높았고, 그 비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승하여 2018년에는 57.9%에 이룸
 - 신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2013년 결손 조합법인의 비중이 15~23%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
 - 하지만 산림조합의 경우 2018년 반등하여 14.7%를 기록
 -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수는 매년 1~3개로 미미한 수준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은 2013년 57.8조원에서 2016년 55.6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여 2018년 63.1조원 수준에 이룸
- 조합법인 유형 중 농협의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는 25.4조원, 비중은 40.2% 수준
 - 하지만 농협의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은 2013년에 비해 각각 1.3조원, 5.9% 포인트 감소
 - 농협 다음으로 큰 규모와 비중을 보이는 유형은 새마을금고와 신탁인데, 농협과는 반대로 이 유형의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은 상승 추세
 -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와 비중이 2013년 3.5조원, 6.1%에서 2018년 4.3조원, 6.8%로 상승
 - 신탁의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은 2013년 3.3조원, 5.7%에서 2018년 3.9조원, 6.2%로 증가

- 반면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은 수입금액의 규모와 비중이 미미한 수준
- 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타조합의 수입금액 규모는 2013년 22.7조원에서 2018년 28.9조원으로 상승하였고, 비중도 39.3%에서 45.8%로 증가
 - 결국 전체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상승은 결국 기타조합의 수입금액 상승에 의한 것임

<표 II -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단위: 조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57.8 (100.0)	58.0 (100.0)	56.3 (100.0)	55.6 (100.0)	58.5 (100.0)	63.1 (100.0)
농협	26.7 (46.1)	24.3 (41.9)	23.4 (41.5)	22.1 (39.8)	23.7 (40.6)	25.4 (40.2)
수협	0.8 (1.3)	0.1 (0.2)	0.3 (0.5)	0.2 (0.4)	0.3 (0.5)	0.3 (0.4)
신협	3.3 (5.7)	3.3 (5.6)	3.3 (5.8)	3.2 (5.8)	3.5 (5.9)	3.9 (6.2)
새마을금고	3.5 (6.1)	4.7 (8.1)	4.4 (7.8)	4.1 (7.4)	4.7 (8.0)	4.3 (6.8)
산림조합	0.5 (0.8)	0.4 (0.6)	0.3 (0.6)	0.2 (0.4)	0.3 (0.5)	0.2 (0.4)
소비자생협	0.4 (0.6)	0.4 (0.7)	0.2 (0.3)	0.4 (0.7)	0.2 (0.3)	0.2 (0.3)
기타조합 ¹⁾	22.7 (39.3)	24.9 (42.9)	24.5 (43.5)	25.2 (45.4)	25.9 (44.2)	28.9 (45.8)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3년 127억원에서 2015년 12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2018년 149억원 수준에 이름

- 평균 수입금액의 변화 추이는 수입금액 규모별로 서로 다른 양상
 -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3년 5.8억원에서 2016년 7.7억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소폭 감소하여 2018년 7.2억원에 이름
 -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큰 변동없이 45억~46억원 수준을 유지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경우, 2013년 376억원이던 평균 수입금액 규모가 2016년 363억원 수준까지 축소되었다가 2018년 387억원 수준으로 다시 증가

<표 II -1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126.9	127.3	125.2	126.4	132.4	144.8
	0~20억원 이하	5.8	6.9	7.3	7.7	7.4	7.2
	20억~100억원 이하	46.7	45.7	45.6	45.6	46.3	46.9
	100억원 초과	376.3	371.4	363.9	362.5	371.4	387.1
농협	계	342.5	328.8	339.7	330.0	338.4	396.4
	0~20억원 이하	3.8	2.9	4.8	5.4	7.4	8.8
	20억~100억원 이하	79.9	77.6	74.4	76.1	78.0	76.9
	100억원 초과	377.1	368.7	374.0	365.8	369.3	435.9
수협	계	358.2	205.2	433.4	402.9	459.9	466.9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60.6	54.4	-	-	-	-
	100억원 초과	451.2	280.6	433.4	402.9	459.9	466.9
신협	계	36.2	36.6	36.9	36.5	39.8	45.0
	0~20억원 이하	10.0	9.9	10.0	9.7	9.7	9.2
	20억~100억원 이하	43.5	42.3	41.6	40.6	42.2	43.1
	100억원 초과	156.2	195.7	186.0	181.2	190.5	193.6
새마을금고	계	32.5	40.1	38.8	37.8	41.5	45.6
	0~20억원 이하	5.7	10.8	11.1	11.9	11.9	12.1
	20억~100억원 이하	41.3	41.5	41.9	41.3	41.7	43.9
	100억원 초과	179.9	164.6	157.3	176.5	184.7	179.7
산림조합	계	69.6	67.6	66.4	66.5	68.1	71.2
	0~20억원 이하	0.0	0.9	-	-	-	-
	20억~100억원 이하	62.9	62.4	60.3	60.1	62.2	64.2
	100억원 초과	121.7	109.8	123.0	119.4	146.6	143.1
소비자생활협	계	63.1	94.0	51.3	103.3	70.1	87.8
	0~20억원 이하	6.8	6.9	8.9	5.7	6.3	4.4
	20억~100억원 이하	45.3	51.0	48.2	56.5	56.7	64.9
	100억원 초과	429.5	409.7	171.9	448.7	167.1	207.9
기타조합 ¹⁾	계	138.8	150.2	143.9	150.9	157.8	155.4
	0~20억원 이하	4.0	4.0	4.4	4.6	4.3	4.7
	20억~100억원 이하	50.2	49.8	51.6	51.8	53.3	49.9
	100억원 초과	417.3	416.9	394.3	391.9	417.6	391.9

주: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을 조합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등락을 보이지만 2013년 대비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은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 이는 대체적으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한 데서 기인
 - 평균 수입금액이 높은 조합법인 유형은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높았던 농협과 수협
 - 농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을 기록
 - 수협의 경우 100억원 초과 법인만 남은 2015년 이후 평균 수입금액이 매년 4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비중이 높고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이 낮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수입금액 규모는 30억~40억원대 수준
 -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법인이 대부분인 산림조합은 평균 수입금액이 60억~70억원대 수준
 - 다양한 시장 물류유통 경로 중 하나로서 시장경쟁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생활협회는 가장 큰 폭의 등락을 보였는데, 평균 수입금액이 51억~103억원 사이에서 변동함
 - 특히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변동이 심함

- 평균 수입금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전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
 -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입금액 규모는 수익 규모가 클수록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조합법인 수가 1~3개 수준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을 제외하고 평균 수입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과세표준 구간은 20억~200억원 이하로, 2013년 658억원에서 549억원으로 감소
 - 과세표준 0~2억원 이하와 2억~20억원 이하 구간의 조합법인 수입 규모는 2013~2018년 동안 각각 5억원과 19억원 감소
 - 각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은 과세표준이 높은 법인의 수와 비중이 증가하였기 때문

<표 II -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126.9	127.3	125.2	126.4	132.4	144.8
	0원 미만	37.2	43.4	34.1	36.3	27.9	34.3
	0~2억원 이하	27.5	31.3	26.6	28.0	25.7	22.2
	2억~20억원 이하	145.4	136.4	135.2	138.0	127.6	126.7
	20억~200억원 이하	658.4	604.7	651.4	618.3	607.3	548.6
	200억원 초과	10,215.1	17,453.0	3,741.6	2,612.4	2,476.7	7,214.8
농협	계	342.5	328.8	339.7	330.0	338.4	396.4
	0원 미만	255.4	230.3	187.5	153.5	289.7	118.7
	0~2억원 이하	126.8	129.2	133.6	133.1	112.7	67.6
	2억~20억원 이하	267.2	256.7	242.3	250.6	242.8	249.6
	20억~200억원 이하	754.7	746.4	743.4	646.5	643.0	689.1
	200억원 초과	-	-	3,741.6	3,918.3	4,071.8	7,214.8
수협	계	358.2	205.2	433.4	402.9	459.9	466.9
	0원 미만	140.1	-	-	126.5	-	-
	0~2억원 이하	32.8	118.9	200.4	266.7	200.8	-
	2억~20억원 이하	300.5	248.3	255.8	720.7	453.4	230.3
	20억~200억원 이하	750.9	-	629.5	316.1	599.1	703.4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36.2	36.6	36.9	36.5	39.8	45.0
	0원 미만	28.8	23.0	18.8	20.2	14.1	16.6
	0~2억원 이하	19.7	19.5	17.4	18.4	17.6	14.5
	2억~20억원 이하	53.1	53.1	52.9	49.9	52.4	52.1
	20억~200억원 이하	158.3	180.5	178.0	171.0	166.8	191.0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32.5	40.1	38.8	37.8	41.5	45.6
	0원 미만	20.7	23.5	20.1	25.4	22.6	23.7
	0~2억원 이하	17.9	18.4	20.1	20.1	18.7	17.3
	2억~20억원 이하	35.7	43.1	45.5	46.3	43.1	43.9
	20억~200억원 이하	147.7	155.4	163.8	168.4	173.6	172.2
	200억원 초과	-	-	-	-	-	-
산림조합	계	69.6	67.6	66.4	66.5	68.1	71.2
	0원 미만	56.8	49.9	51.2	48.3	66.3	55.0
	0~2억원 이하	57.4	55.6	56.8	49.8	59.8	65.7
	2억~20억원 이하	85.2	75.7	72.7	75.7	70.7	77.7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63.1	94.0	51.3	103.3	70.1	87.8
	0원 미만	9.9	31.6	56.1	26.1	75.8	77.1
	0~2억원 이하	25.3	41.3	45.4	167.8	72.1	63.0
	2억~20억원 이하	173.7	277.2	60.4	126.1	59.4	379.1
	20억~200억원 이하	1,488.0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138.8	150.2	143.9	150.9	157.8	155.4
	0원 미만	34.2	44.5	40.0	42.3	25.4	35.1
	0~2억원 이하	28.4	35.6	26.2	26.3	26.8	24.4
	2억~20억원 이하	189.5	188.6	194.4	182.7	179.7	169.3
	20억~200억원 이하	778.8	725.4	777.7	779.2	836.7	627.4
	200억원 초과	10,215.1	17,453.0	-	1,306.5	-	-

주: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의 경우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2013년 대비 축소
 - 하지만 2018년 농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3년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과세표준이 높은 농협조합의 수와 비중의 증가에서 기인
 - 다른 조합법인 유형의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2013년 대비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증가
 - 신탁은 과세표준 20억~200억 이하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이 2013년 158억 원에서 2018년 191억 원으로 증가
 - 새마을조합은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
 - 소비자생협은 전 구간에서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이 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
- 농협과 수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다른 조합법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과세표준이 20억원 이하인 농협과 수협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대체로 100억~200억원대 수준인 반면, 다른 조합법인 유형의 경우 100억원 미만 수준
 -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구간에서 예외적으로 소비자생협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수입금액을 보여줌
 - 과세표준 20억~200억 이하 구간에서는 농협과 수협의 평균 수입금액 규모는 600억~700억원대 수준이지만 나머지 조합법인 유형 중 동 구간에서 조합법인이 존재하는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100억원대 수준
-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감소 추세
- 결손법인 수는 2013년 전체 조합법인의 15.9%인 725개였으나 2018년 전체 법인의 9.0%인 393개 수준으로 감소
 - 농협과 수협은 2018년 기준 결손법인의 비중이 각각 1.9%와 0%로 가장 낮은 수준
 - 농협의 적자법인 비중은 2013년 3.5%에서 감소 추세에 있고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 수협은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만 유지하고 조합 수를 줄인 결과, 2014년부터 결손기업이 없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적자법인 비중은 2013년 각각 20.4%와 17.0%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
 - 2013~2018년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결손법인의 수가 1/3 수준 또는 그 이상 감소하여 결손법인의 비중이 각각 7.3%, 5.8% 수준
-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협의 결손법인 수는 2017년까지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다시 반등
 - 이들 유형의 결손법인 비중은 감소하다 2018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음
 - 소비자생협의 결손법인 비중은 매년 20~50%대로 높고 특히 2018년에는 57.9%로 정점을 보였는데, 이는 시장경쟁의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

〈표 II -13〉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725 (15.9)	587 (12.9)	644 (14.3)	593 (13.5)	469 (10.6)	393 (9.0)
농협	27 (3.5)	21 (2.8)	9 (1.3)	17 (2.5)	7 (1.0)	12 (1.9)
수협	2 (9.5)	0 (0.0)	0 (0.0)	0 (0.0)	0 (0.0)	0 (0.0)
신협	185 (20.4)	117 (13.1)	102 (11.5)	110 (12.5)	97 (11.1)	63 (7.3)
새마을금고	184 (17.0)	112 (9.6)	168 (14.9)	160 (14.6)	82 (7.2)	54 (5.8)
산림조합	7 (10.0)	6 (11.5)	8 (15.4)	3 (8.1)	2 (4.7)	5 (14.7)
소비자생협	20 (34.5)	14 (33.3)	15 (42.9)	17 (44.7)	5 (21.7)	11 (57.9)
기타조합 ¹⁾	300 (18.3)	317 (19.1)	342 (20.1)	286 (17.1)	276 (16.8)	248 (13.3)

주: 1. () 안은 전체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의 비중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흑자를 기록한 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3년 2.4조원에서 2018년 3.9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당기순이익 비중은 조합법인 수가 많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 높은 수준인데, 이들 조합법인 유형의 2018년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3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
 -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농협으로, 당기순이익은 2014년 저점(8,466억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조 3,369억원 수준에 이룸
 - 신협은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유형으로 당기순이익이 2013년 2,379억원에서 2018년 5,048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
 - 2018년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6,166억원으로 2013년 4,565억원보다 큰 규모이지만, 당기순이익의 추세는 4천억~6천억원대 범위에서 등락하는 양상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은 당기순이익 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2013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은 감소
 - 수협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6억원을 저점으로 2018년 163억원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
 -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협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기타조합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면서 2013년 7,507억원 수준에서 2018년 1조 4,422억원 수준으로 약 2배 성장

- 흑자를 기록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6억원 수준에서 2018년 10억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평균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주로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익성 개선에서 기인
 - 특히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2013년 13억원 수준에서 2018년 21억원 수준으로 큰 폭 증가
 -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3.6억원에서 2018년 5.3억원으로 상승
 -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경우와 다르게 수입금액 0~20억원의 영세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2억원 수준에서 2018년 1억원 수준까지 감소하여 경영실적 악화

<표 II -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23,623 (100.0)	25,771 (100.0)	26,158 (100.0)	27,191 (100.0)	32,516 (100.0)	39,270 (100.0)
농협	8,747 (37.0)	8,466 (32.8)	8,996 (34.4)	9,416 (34.6)	10,836 (33.3)	13,369 (34.0)
수협	194 (0.8)	26 (0.1)	104 (0.4)	88 (0.3)	146 (0.4)	163 (0.4)
신협	2,379 (10.1)	2,649 (10.3)	2,999 (11.5)	3,345 (12.3)	4,118 (12.7)	5,048 (12.9)
새마을금고	4,565 (19.3)	6,187 (24.0)	4,994 (19.1)	4,215 (15.5)	6,681 (20.5)	6,166 (15.7)
산림조합	167 (0.7)	161 (0.6)	175 (0.7)	105 (0.4)	138 (0.4)	96 (0.2)
소비자생협	63 (0.3)	41 (0.2)	19 (0.1)	7 (0.0)	22 (0.1)	6 (0.0)
기타조합 ¹⁾	7,507 (31.8)	8,242 (32.0)	8,871 (33.9)	10,015 (36.8)	10,576 (32.5)	14,422 (36.7)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2. 흑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농협과 수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각각 21억원과 27억원으로, 1억~7억원 수준인 다른 조합법인 유형보다 높은 수준

○ 하지만 수입금액 규모별로 조합법인 유형 간 비교를 해보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농협과 수협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을 예를 들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각각 28억원과 32억원으로 농협과 수협의 평균 당기순이익 23억원과 27억원보다 높은 수준

- 농협과 수협의 전체 평균 당기순이익이 높은 이유는 다른 유형에 비해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수의 비중이 높기 때문

□ 평균 당기순이익은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추세

○ 특히 수협의 경우 평균 당기순이익 규모가 2013년 대비 약 3배 가까이 성장함

- 이는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만 유지하고 조합 수를 줄인 결과로 판단됨

- 농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
 - 농협은 대부분 조합법인이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들로, 이들 대규모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13억원 수준에서 2018년 23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

<표 II -15>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6.16	6.49	6.78	7.15	8.23	9.90
	0~20억원 이하	1.92	1.41	1.15	1.07	1.20	1.19
	20억~100억원 이하	3.63	4.33	4.18	4.04	4.69	5.29
	100억원 초과	12.97	13.66	14.62	15.99	18.14	21.49
농협	계	11.63	11.79	13.23	14.40	15.61	21.29
	0~20억원 이하	1.68	1.90	2.67	0.83	0.51	1.05
	20억~100억원 이하	3.28	3.81	3.25	3.46	3.88	3.95
	100억원 초과	12.68	13.01	14.46	15.84	16.98	23.25
수협	계	10.21	4.28	17.37	14.63	24.26	27.18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2.22	2.47	-	-	-	-
	100억원 초과	12.35	5.19	17.37	14.63	24.26	27.18
신협	계	3.29	3.42	3.82	4.34	5.31	6.27
	0~20억원 이하	1.29	1.17	1.22	1.22	1.22	1.36
	20억~100억원 이하	3.76	3.82	4.05	4.39	4.79	5.30
	100억원 초과	11.08	14.97	17.07	21.33	27.39	28.03
새마을금고	계	5.07	5.85	5.19	4.51	6.35	7.01
	0~20억원 이하	3.55	2.04	1.54	1.53	1.95	1.66
	20억~100억원 이하	4.35	5.35	4.87	4.42	5.21	6.06
	100억원 초과	23.65	26.91	22.96	23.10	37.03	31.82
산림조합	계	2.66	3.49	3.97	3.10	3.38	3.30
	0~20억원 이하	-	0.81	-	-	-	-
	20억~100억원 이하	2.16	2.65	3.36	2.78	3.19	2.96
	100억원 초과	5.64	8.48	8.70	5.48	5.76	6.31
소비자생활협	계	1.66	1.47	0.96	0.34	1.24	0.72
	0~20억원 이하	0.24	0.35	0.57	0.10	0.83	0.37
	20억~100억원 이하	0.78	1.63	1.01	0.57	1.42	0.57
	100억원 초과	7.80	2.59	2.25	0.32	1.51	1.47
기타조합 ¹⁾	계	5.61	6.14	6.52	7.23	7.76	8.95
	0~20억원 이하	1.19	1.20	0.88	0.74	0.77	0.91
	20억~100억원 이하	2.81	3.16	3.30	3.22	3.85	4.56
	100억원 초과	12.67	12.88	13.68	15.28	16.25	18.17

주: 1. 후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1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4.47	5.09	5.29	5.75	7.10	8.77
	0원 미만	-4.57	-4.24	-3.66	-3.16	-2.33	-2.34
	0~2억원 이하	0.63	0.65	0.66	0.66	0.69	0.67
	2억~20억원 이하	5.95	6.12	6.19	6.39	6.45	6.79
	20억~200억원 이하	34.06	35.05	35.99	37.87	39.54	41.07
	200억원 초과	284.22	222.97	250.10	238.60	489.70	701.44
농협	계	10.72	11.10	12.95	13.93	15.40	20.73
	0원 미만	-16.19	-11.28	-7.63	-4.13	-1.42	-8.64
	0~2억원 이하	0.79	0.99	0.89	1.02	1.04	1.04
	2억~20억원 이하	6.98	7.10	7.05	7.88	7.92	8.34
	20억~200억원 이하	34.94	37.05	37.86	38.13	39.57	43.05
	200억원 초과	-	-	250.10	277.06	230.10	701.44
수협	계	9.18	4.28	17.37	14.63	24.26	27.18
	0원 미만	-0.68	-	-	1.92	-	-
	0~2억원 이하	0.04	0.30	0.19	4.19	0.91	-
	2억~20억원 이하	6.77	6.27	4.70	21.30	17.24	6.25
	20억~200억원 이하	24.80	-	31.54	34.91	46.46	48.10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1.63	2.29	2.87	2.92	4.23	5.50
	0원 미만	-4.93	-5.22	-4.10	-6.27	-4.35	-3.96
	0~2억원 이하	0.75	0.78	0.78	0.83	0.79	0.80
	2억~20억원 이하	5.12	5.19	5.36	5.67	5.98	6.10
	20억~200억원 이하	29.14	28.73	32.26	35.87	37.22	40.57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3.35	4.75	3.97	3.44	5.63	6.36
	0원 미만	-5.43	-5.86	-3.07	-2.92	-3.48	-3.95
	0~2억원 이하	0.80	0.97	0.81	0.82	1.00	0.88
	2억~20억원 이하	5.34	5.75	5.73	5.37	5.59	6.02
	20억~200억원 이하	31.80	33.81	31.41	33.42	34.77	36.85
	200억원 초과	-	-	-	-	749.30	-
산림조합	계	1.39	2.62	2.83	2.50	2.99	2.56
	0원 미만	-4.11	-3.14	-3.48	-4.34	-3.11	-1.36
	0~2억원 이하	1.24	1.06	1.17	0.93	1.28	1.00
	2억~20억원 이하	4.34	4.41	4.79	4.00	4.07	4.24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0.93	0.85	0.21	-0.23	0.76	-0.26
	0원 미만	-0.46	-0.36	-0.79	-0.93	-0.99	-0.96
	0~2억원 이하	0.42	0.69	0.56	0.31	0.40	0.40
	2억~20억원 이하	3.81	2.94	3.20	0.64	3.44	2.93
	20억~200억원 이하	23.89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4.00	4.35	4.45	5.65	6.24	7.55
	0원 미만	-3.22	-3.02	-3.81	-2.02	-1.28	-1.32
	0~2억원 이하	0.48	0.37	0.50	0.44	0.45	0.52
	2억~20억원 이하	6.13	6.41	6.60	6.61	6.64	7.03
	20억~200억원 이하	34.78	34.24	36.09	39.04	41.69	40.66
	200억원 초과	284.22	222.97	-	200.14	-	-

주: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의 경우 평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농협과 수협에 비해 작은 편
 - 신협의 2018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였고,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의 경우도 각각 38%와 24% 성장
 - 소비자생협은 가장 실적이 저조한 조합법인 유형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3년 1.7억원 수준에서 2018년 0.7억원으로 감소
- 적자 조합법인을 포함한 평균 당기순손익 역시 대체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
- 평균 당기순손익 규모는 2013년 4억원 수준에서 2018년 9억원 수준으로 2배 이상 증가
 -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경우 적자 규모가 2013년 5억원 수준에서 2018년 2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여 경영상황 개선
 - 결손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의 감소도 평균 당기순손익의 증가에 기여
 -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평균 당기순손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2018년 평균 당기순손익은 2013년 대비 2~3배 정도 성장
 - 평균 당기순손익의 개선은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5년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 결손 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은 소비자생협은 평균 당기순손익이 가장 낮은 유형이며 2013년에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여 실적은 악화되는 추세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은 2013년 4.3%에서 2018년 6.4%로 수익성은 개선 추세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등락을 보이지만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상승이 전체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상승을 견인
 - 2013~2018년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7.6%에서 11.3%, 3.4%에서 5.5%로 상승
 -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빠르게 감소하였다가(32.0 → 12.9%) 반등하여 2018년 15.1%로 소폭 회복

- 당기순이익률은 수입금액 규모가 커감에 따라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데, 영세조합법인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격차는 큰 편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간 당기순이익률 격차는 9.5%p(=15.1%-5.5%)

<표 II -1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당기순이익률

(단위: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4.28	4.67	4.83	5.09	5.68	6.35
	0~20억원 이하	31.98	18.64	14.65	12.86	14.58	15.10
	20억~100억원 이하	7.61	9.38	9.01	8.80	10.07	11.25
	100억원 초과	3.42	3.68	4.02	4.39	4.87	5.54
농협	계	3.36	3.56	3.88	4.31	4.61	5.30
	0~20억원 이하	67.16	91.46	61.03	12.36	6.90	13.79
	20억~100억원 이하	4.09	4.91	4.36	4.48	4.99	5.13
	100억원 초과	3.34	3.51	3.86	4.30	4.60	5.30
수협	계	2.68	2.09	4.01	3.63	5.27	5.82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3.15	4.54	-	-	-	-
	100억원 초과	2.66	1.85	4.01	3.63	5.27	5.82
신협	계	8.64	8.86	9.72	11.23	12.38	13.26
	0~20억원 이하	12.57	11.57	11.96	11.84	11.93	14.24
	20억~100억원 이하	8.64	8.97	9.64	10.83	11.22	12.20
	100억원 초과	7.08	7.57	9.18	11.77	14.37	14.48
새마을금고	계	14.61	14.05	12.31	11.30	14.78	14.89
	0~20억원 이하	69.32	19.08	13.73	12.91	16.26	13.69
	20억~100억원 이하	10.29	12.68	11.35	10.54	12.39	13.69
	100억원 초과	12.87	16.44	14.60	12.87	20.05	17.71
산림조합	계	3.66	5.04	5.75	4.55	4.96	4.45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3.35	4.16	5.41	4.54	5.16	4.47
	100억원 초과	4.64	7.72	7.08	4.59	3.93	4.41
소비자생협	계	1.82	1.18	2.01	0.20	1.81	0.70
	0~20억원 이하	2.79	4.78	5.13	1.23	13.98	4.44
	20억~100억원 이하	1.68	3.21	2.12	1.04	2.39	0.86
	100억원 초과	1.82	0.57	1.16	0.06	0.83	0.49
기타조합 ¹⁾	계	3.45	3.55	3.83	4.17	4.21	5.13
	0~20억원 이하	26.13	25.89	17.69	14.25	15.52	17.44
	20억~100억원 이하	5.51	6.33	6.22	6.22	7.15	9.18
	100억원 초과	3.00	3.11	3.48	3.89	3.87	4.65

주: 1. 후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당기순이익률을 조합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생산자들과 직접 관계를 맺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등의 당기순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신탁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은 10%가 넘는 수준으로 2018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률이 14.9%로 가장 높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당기순이익률은 4~5% 수준
 - 상품 유통에 참여하여 시장경쟁의 수준이 높은 소비자생협의 경우 당기순이익률이 1% 미만 수준으로 가장 낮음
 - 대체적으로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단 신탁의 경우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당기순이익률이 증가 추세
 - 소비자생협의 경우 소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1~14% 사이를 등락하고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감소 추세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손익률(당기순손익/수입금액)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18년 당기순손익률은 6.1% 수준으로 2013년보다 2.6%p 높은 수준
 - 과세표준 0원 미만 조합법인은 당기순손실률이 44% 감소하고 과세표준 20억~200억원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률이 44%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임(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은 그 수가 미미하여 예외로 함)
 - 당기순손익률은 과세표준이 높은 수준일수록 큰 경향이 있으나, 과세표준이 낮은 조합법인과 높은 조합법인 간 당기순손익률 격차는 크지 않음
 - 2018년 기준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과세표준 20억~200억원 이하 조합법인 간 당기순손익률 격차는 4.4%p(=7.4%-3.0%)
 - 당기순이익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8년 기준 새마을금고와 신탁의 당기순손익률은 13~15%로 다른 유형의 조합법인보다 높은 수준
 -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당기순손익률은 4~6% 수준이고 소비자생협은 -0.3%로 유일하게 음(-)의 당기순손익률 시현

<표 II - 1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당기순손익률

(단위: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3.52	4.00	4.22	4.55	5.37	6.06
	0원 미만	-12.26	-9.76	-10.71	-8.72	-8.35	-6.82
	0~2억원 이하	2.30	2.07	2.48	2.36	2.69	3.02
	2억~20억원 이하	4.09	4.49	4.58	4.63	5.06	5.34
	20억~200억원 이하	5.17	5.78	5.53	6.12	6.51	7.44
	200억원 초과	2.78	1.28	6.68	9.13	19.77	9.72
농협	계	3.13	3.38	3.81	4.22	4.55	5.23
	0원 미만	-6.34	-4.90	-4.07	-2.69	-0.49	-7.28
	0~2억원 이하	0.62	0.76	0.67	0.75	0.92	1.54
	2~20억원 이하	2.61	2.76	2.91	3.14	3.26	3.33
	20억~200억원 이하	4.63	4.96	5.09	5.90	6.15	6.23
	200억원 초과	-	-	6.68	7.07	5.65	9.72
수협	계	2.56	2.09	4.01	3.63	5.27	5.82
	0원 미만	-0.48	-	-	1.52	-	-
	0~2억원 이하	0.13	0.25	0.09	1.57	0.45	-
	2~20억원 이하	2.25	2.53	1.84	2.95	3.80	2.71
	20억~200억원 이하	3.30	-	5.01	11.04	7.76	6.84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4.51	6.25	7.80	8.02	10.63	12.21
	0원 미만	-17.15	-22.74	-21.78	-31.02	-30.81	-23.93
	0~2억원 이하	3.82	4.02	4.48	4.51	4.48	5.47
	2억~20억원 이하	9.64	9.79	10.14	11.35	11.41	11.65
	20억~200억원 이하	18.42	15.92	18.12	20.98	22.32	20.98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10.32	11.83	10.23	9.09	13.57	13.94
	0원 미만	-26.24	-25.00	-15.27	-11.58	-15.38	-16.63
	0~2억원 이하	4.45	5.27	4.03	4.07	5.33	5.06
	2억~20억원 이하	14.97	13.36	12.56	11.59	12.96	13.61
	20억~200억원 이하	21.53	21.38	19.18	19.85	20.03	21.08
	200억원 초과	-	-	-	-	-	-
산림조합	계	2.00	3.88	4.26	3.76	4.39	3.60
	0원 미만	-7.22	-6.28	-6.79	-8.99	-4.68	-2.47
	0~2억원 이하	2.15	1.90	2.07	1.88	2.13	1.53
	2억~20억원 이하	5.09	5.83	6.59	5.29	5.76	5.46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1.48	0.90	0.40	-0.23	1.08	-0.29
	0원 미만	-4.58	-1.15	-1.42	-3.56	-1.31	-1.25
	0~2억원 이하	1.67	1.67	1.24	0.19	0.55	0.64
	2억~20억원 이하	2.19	1.06	5.30	0.51	5.78	0.77
	20억~200억원 이하	1.61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2.88	2.90	3.10	3.74	3.95	4.86
	0원 미만	-9.38	-6.78	-9.52	-4.77	-5.04	-3.75
	0~2억원 이하	1.68	1.04	1.89	1.69	1.69	2.14
	2억~20억원 이하	3.23	3.40	3.39	3.61	3.69	4.15
	20억~200억원 이하	4.47	4.72	4.64	4.99	4.98	6.46
	200억원 초과	2.78	1.28	-	15.32	-	-

주: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당기순손익률은 2013~2018년 기간 동안 증가하는 추세
 - 대체로 과세표준 0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당기순손익률 개선
 - 신협의 경우 과세표준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당기순손익률이 2013년 -17.2%에서 2018년 -24.0%로 악화
 - 농협은 과세표준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당기순손익률이 개선되면서 2017년 -0.5%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8년 -7.3%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 소비자생협의 당기순손익률은 과세표준 0원 미만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었으나 결손법인의 비중 증가로 인해 전체 당기순손익률은 악화

- 2018년 기준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0.0% 수준으로, 당기순이익 규모와 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조합법인 유형 및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차이
 - 당기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협과 수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10.5%와 9.7%로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작은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8.9%로 가장 낮음
 - 수입금액 규모별로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경우 9.1%, 100억 초과인 경우 10.3%로 나타남
 - 이러한 실효세율 격차는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9%/12%)이 적용되기 때문

<표 II -1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18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¹⁾
전체	10.0	10.5	9.7	9.5	9.5	8.9	8.9	10.0
0~20억원 이하	9.1	9.0	-	8.9	8.9	-	8.9	9.4
20억~100억원 이하	8.9	8.9	-	8.9	9.0	8.9	9.0	8.9
100억원 초과	10.3	10.5	9.7	10.2	10.3	8.9	8.9	10.2

주: 1. 평균 실효세율은 총 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을 의미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에 의한 조세특례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산출세액에서 현재 과세표준 수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값을 감면금액으로 정의하여 조세특례 규모를 추정²⁾
 - 이는 저율과세 효과만 추정하는 것으로,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 효과는 제외
 -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월공제 등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감면금액과 차이가 존재
 - 세무조정사항, 이월공제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예측 또는 전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금액 총액은 2013년 2,775억원에서 2018년 4,210억원으로 상승 추세인 것으로 추정
 - 이와 같은 상승 추세는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감면금액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 2013~2018년 기간 동안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추정 감면금액은 542억원에서 945억원으로 증가했고,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경우 2,006억원에서 3,177억원으로 증가
 - 같은 기간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영세조합법인의 감면금액 추정 규모는 2013년 227억원에서 2016년 83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회복하여 2018년 88억원 수준에 이룸
 - 추정 감면금액 규모는 조합법인 수가 많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순으로 높고 이들 조합법인 유형의 추정 감면금액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
 - 농협의 추정 감면금액은 2013~2015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2018년 1,437억원에 이룸
 - 새마을금고의 감면금액 추정 규모는 약 450억~700억원 범위에서 등락하는 양상이지만 2018년 추정 감면금액은 2013년 대비 약 134억원 높은 수준
 - 신협의 경우 추정 감면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519억원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2013년 추정 감면금액 규모 254억원보다 2배 이상 큰 수준
 - 조합법인 수가 적은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감면금액 추정 규모는 25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2) 전병목·류덕현(2017) pp. 36~38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차용

- 2018년 기준 조합법인 수가 2013년 조합법인 수의 5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

<표 II -2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감면금액(추정)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2,775.0	2,999.5	2,848.9	2,929.1	3,502.3	4,209.9
	0~20억원 이하	227.3	127.1	95.5	83.3	92.3	88.3
	20억~100억원 이하	541.6	779.1	699.2	652.4	825.5	944.5
	100억원 초과	2,006.1	2,093.3	2,054.3	2,193.4	2,584.6	3,177.1
농협	계	1,061.0	1,018.4	993.6	1,025.7	1,182.4	1,436.9
	0~20억원 이하	1.7	2.1	5.0	0.3	0.1	0.7
	20억~100억원 이하	24.3	32.6	19.6	26.0	27.0	21.5
	100억원 초과	1,035.0	983.8	969.0	999.4	1,155.4	1,414.7
수협	계	25.9	3.5	12.8	5.5	14.9	16.3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1.2	0.5	-	-	-	-
	100억원 초과	24.8	2.9	12.8	5.5	14.9	16.3
신협	계	253.9	278.3	312.5	339.3	421.4	518.9
	0~20억원 이하	24.1	21.7	25.2	24.8	21.7	27.0
	20억~100억원 이하	174.1	187.9	199.1	200.2	231.0	270.5
	100억원 초과	55.7	68.7	88.2	114.4	168.7	221.4
새마을금고	계	516.3	693.9	540.6	447.5	708.5	650.0
	0~20억원 이하	141.5	46.6	31.5	32.7	42.7	28.4
	20억~100억원 이하	240.4	439.2	355.1	297.6	411.4	407.2
	100억원 초과	134.4	208.0	153.9	117.2	254.5	214.5
산림조합	계	16.0	19.0	19.8	12.7	17.4	12.3
	0~20억원 이하	0.0	0.0	-	-	-	-
	20억~100억원 이하	10.3	12.0	15.0	10.2	15.3	10.1
	100억원 초과	5.7	7.0	4.7	2.5	2.1	2.2
소비자생활협	계	6.2	3.9	1.2	0.7	2.4	0.6
	0~20억원 이하	0.0	0.0	0.3	0.0	0.5	0.0
	20억~100억원 이하	0.8	2.3	0.3	0.0	1.3	0.0
	100억원 초과	5.4	1.6	0.6	0.7	0.7	0.6
기타조합 ¹⁾	계	895.6	982.4	968.5	1,097.7	1,155.3	1,574.9
	0~20억원 이하	59.9	56.5	33.5	25.5	27.4	32.2
	20억~100억원 이하	90.6	104.6	110.0	118.5	139.6	235.2
	100억원 초과	745.1	821.3	825.0	953.7	988.3	1,307.5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3.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2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감면금액(추정)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2,775.0	2,999.5	2,848.9	2,929.1	3,502.3	4,209.9
	0원 미만	0.0	0.0	-0.1	0.0	-0.1	-0.1
	0~2억원 이하	11.0	10.8	9.9	10.4	9.7	8.2
	2억~20억원 이하	1,519.4	1,640.5	1,558.7	1,513.5	1,693.8	1,839.8
	20억~200억원 이하	1,165.7	1,314.7	1,254.8	1,353.5	1,699.3	2,149.3
	200억원 초과	79.0	33.5	25.6	51.7	99.6	212.7
농협	계	1,061.0	1,018.4	993.6	1,025.7	1,182.4	1,436.9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5	0.5	0.4	0.4	0.4	0.3
	2억~20억원 이하	474.8	443.8	409.7	423.2	448.6	410.5
	20억~200억원 이하	585.7	574.1	557.9	573.7	709.6	813.4
	200억원 초과	-	-	25.6	28.4	23.8	212.7
수협	계	25.9	3.5	12.8	5.5	14.9	16.3
	0원 미만	0.0	-	-	0.0	-	-
	0~2억원 이하	0.0	0.0	0.0	0.0	0.0	-
	2억~20억원 이하	13.0	3.5	1.5	2.0	5.6	2.6
	20억~200억원 이하	12.9	-	11.4	3.5	9.2	13.7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253.9	278.3	312.5	339.3	421.4	518.9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3.3	3.4	3.0	3.2	3.0	2.4
	2억~20억원 이하	220.6	228.1	254.2	243.3	271.1	329.2
	20억~200억원 이하	30.0	46.8	55.3	92.8	147.4	187.3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516.3	693.9	540.6	447.5	708.5	650.0
	0원 미만	0.0	0.0	-0.1	0.0	-0.1	-0.1
	0~2억원 이하	3.1	3.4	3.0	3.5	3.2	2.2
	2억~20억원 이하	367.2	477.8	401.9	336.4	450.3	414.9
	20억~200억원 이하	146.0	212.6	135.8	107.6	179.3	233.0
	200억원 초과	-	-	-	-	75.8	-
산림조합	계	16.0	19.0	19.8	12.7	17.4	12.3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2	0.1	0.1	0.1	0.1	0.1
	2억~20억원 이하	15.8	18.9	19.7	12.6	17.3	12.2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6.2	3.9	1.2	0.7	2.4	0.6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1	0.1	0.1	0.1	0.1	0.0
	2~20억원 이하	3.3	3.8	1.1	0.6	2.4	0.5
	20억~200억원 이하	2.8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895.6	982.4	968.5	1,097.7	1,155.3	1,574.9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3.8	3.1	3.3	3.1	3.0	3.2
	2억~20억원 이하	424.6	464.6	470.7	495.4	498.6	669.9
	20억~200억원 이하	388.2	481.2	494.5	575.9	653.7	901.8
	200억원 초과	79.0	33.5	-	23.3	-	-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3.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정한 감면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조합법인이 분포하는 과세표준 2억~20억원과 20억~200억원 구간들에서 감면금액 규모가 큼
 - 2018년 기준 각각 1,840억원과 2,149억원으로 추정
 - 동 과세표준 구간에서 추정 감면금액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 추정 감면금액의 증가 추세를 견인
 - 특히 과세표준 20억~2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감면금액은 2013년 1,166억원에서 2018년 2,14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이는 과세표준 20억~20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 수가 빠르게 증가한 영향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들에서 감면금액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추정
 - 하지만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면금액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의 경우 대체로 전 과세표준 구간에서 추정 감면금액이 대체로 감소 추세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감면금액은 2013년 6천만원에서 2018년 1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수입금액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감면금액이 증가(20억~100억원 이하 3천만원 → 6천만원, 100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 2억 3천만원)하는데서 기인
 - 2018년 기준 평균 감면금액은 농협과 수협이 각각 약 2억원과 3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수익성이 가장 좋지 않은 소비자생협은 3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음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약 6~7천만원, 산림조합은 약 4천만원 수준
 - 수입금액 규모별로 조합법인 유형 간 비교 시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감면금액이 농협과 수협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평균 감면금액은 농협과 수협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평균 당기순이익 분석에서처럼 대규모 조합법인의 비중이 작기 때문
 -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2018년 평균 감면금액은 2013년 대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수협이 가장 빠른 평균 감면금액 증가세를 보이는데, 2014년 6천만원 수준을 저점으로 2018년 2.7억원 수준으로 증가
 - 소비자생협의 경우 2013년 1천만원에서 2018년 300만원으로 감소

〈표 II -2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60.9	65.8	63.3	66.6	79.3	96.5
	0~20억원 이하	13.8	8.6	6.4	5.7	6.6	6.9
	20억~100억원 이하	34.0	44.0	41.3	39.8	49.2	56.1
	100억원 초과	152.7	158.9	157.3	169.2	193.2	226.4
농협	계	136.2	137.8	144.2	152.9	168.7	224.5
	0~20억원 이하	12.4	16.1	29.2	4.3	0.6	3.9
	20억~100억원 이하	33.3	38.3	33.8	35.6	43.5	44.0
	100억원 초과	149.6	153.5	157.8	169.4	183.7	246.9
수협	계	123.4	58.2	213.8	91.9	247.8	271.8
	0~20억원 이하	-	-	-	-	-	-
	20억~100억원 이하	23.3	27.2	-	-	-	-
	100억원 초과	154.7	73.7	213.8	91.9	247.8	271.8
신협	계	28.0	31.2	35.3	38.6	48.3	59.8
	0~20억원 이하	7.0	6.3	7.2	7.0	6.3	8.8
	20억~100억원 이하	33.7	37.3	41.0	42.3	49.4	56.2
	100억원 초과	126.6	171.7	183.7	219.9	276.6	276.8
새마을금고	계	47.6	59.3	47.8	40.9	62.5	69.6
	0~20억원 이하	29.8	14.2	9.0	8.8	12.9	11.6
	20억~100억원 이하	43.2	56.8	49.5	44.3	55.8	65.6
	100억원 초과	253.7	301.4	244.3	225.4	379.8	310.8
산림조합	계	22.9	36.6	38.0	34.3	40.4	36.0
	0~20억원 이하	0.0	0.0	-	-	-	-
	20억~100억원 이하	17.1	27.3	32.0	30.8	38.1	32.5
	100억원 초과	63.7	100.4	94.8	63.5	70.3	73.0
소비자생활협	계	10.8	9.3	3.4	2.0	10.5	3.1
	0~20억원 이하	0.1	0.2	2.0	0.1	6.6	0.2
	20억~100억원 이하	4.3	12.2	1.8	0.4	12.7	0.3
	100억원 초과	89.7	22.4	12.1	9.7	11.5	9.2
기타조합 ¹⁾	계	54.6	59.2	56.9	65.7	70.5	84.7
	0~20억원 이하	7.7	7.4	4.4	3.6	3.8	4.6
	20억~100억원 이하	25.1	30.4	30.0	31.3	38.8	47.3
	100억원 초과	150.8	149.6	146.0	163.0	174.6	196.3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조합법인 수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3.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23>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단위: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계	60.9	65.8	63.3	66.6	79.3	96.5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8	0.8	0.7	0.7	0.7	0.7
	2억~20억원 이하	71.5	72.5	73.1	74.9	75.8	79.7
	20억~200억원 이하	419.3	431.1	384.9	400.4	415.5	427.3
200억원 초과	3,948.7	3,346.8	2,563.6	2,585.3	4,979.8	7,090.3	
농협	계	136.2	137.8	144.2	152.9	168.7	224.5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1.0	1.0	0.9	1.0	1.0	1.0
	2억~20억원 이하	82.4	82.5	82.9	89.7	92.3	98.2
	20억~200억원 이하	437.1	463.0	404.3	406.9	419.9	451.9
200억원 초과	-	-	2,563.6	2,837.3	2,381.1	7,090.3	
수협	계	123.4	58.2	213.8	91.9	247.8	271.8
	0원 미만	0.0	-	-	0.0	-	-
	0~2억원 이하	0.0	0.7	0.2	1.4	0.9	-
	2억~20억원 이하	93.1	87.0	73.6	101.2	188.1	87.4
	20억~200억원 이하	322.2	-	378.5	346.1	460.9	456.3
200억원 초과	-	-	-	-	-	-	
신협	계	28.0	31.2	35.3	38.6	48.3	59.8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9	0.9	0.8	0.9	0.9	0.8
	2억~20억원 이하	61.1	61.0	62.9	65.6	68.8	69.9
	20억~200억원 이하	333.7	334.2	325.3	357.1	368.5	390.3
200억원 초과	-	-	-	-	-	-	
새마을금고	계	47.6	59.3	47.8	40.9	62.5	69.6
	0원 미만	0.0	0.0	-0.1	0.0	-0.1	-0.1
	0~2억원 이하	1.0	1.1	0.9	0.9	1.0	1.0
	2억~20억원 이하	64.5	68.5	67.8	64.1	65.5	69.3
	20억~200억원 이하	365.0	386.6	323.3	336.3	351.6	364.1
200억원 초과	-	-	-	-	7,578.6	-	
산림조합	계	22.9	36.6	38.0	34.3	40.4	36.0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8	1.1	1.0	1.1	1.1	1.1
	2억~20억원 이하	51.0	57.3	57.8	52.4	55.7	60.8
	20억~200억원 이하	-	-	-	-	-	-
200억원 초과	-	-	-	-	-	-	
소비자생협	계	10.8	9.3	3.4	2.0	10.5	3.1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5	0.8	0.6	0.5	0.5	0.4
	2억~20억원 이하	47.3	37.9	36.3	64.2	47.1	54.9
	20억~200억원 이하	279.0	-	-	-	-	-
200억원 초과	-	-	-	-	-	-	
기타조합 ¹⁾	계	54.6	59.2	56.9	65.7	70.5	84.7
	0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2억원 이하	0.6	0.5	0.5	0.5	0.5	0.5
	2억~20억원 이하	75.0	76.8	78.3	79.1	79.4	84.3
	20억~200억원 이하	431.4	429.6	392.5	417.3	444.7	433.6
200억원 초과	3,948.7	3,346.8	-	2,333.4	-	-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조합법인 수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

3.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1) 기타조합은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활용하였으나 유형 구분이 어려운 조합법인을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감면금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정한 결과, 과세표준 2억원 초과 조합법인들의 평균 감면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증가 추세
 - 하지만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하면 2013년 대비 2018년 감면금액의 증가폭은 작은 수준
 -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와 과세표준 20억~200억원 이하 구간들에서 감면금액의 증가폭은 각각 11%, 2%
 - 이는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조합법인 비중의 감소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 비중의 증가가 평균 감면 금액의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암시
 - 이러한 추이는 조합법인 유형에 상관없이 발견
 - 소비자생협의 경우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구간에서 2018년 평균 감면금액은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체 평균 감면금액은 감소
 - 이는 결손기업 또는 과세표준 0원 미만인 조합법인의 비중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 가능

- 조합법인들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출자금 배당, 이용실적 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환원 중
 - 조합법인들의 배당성향(배당액/당기순이익)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산림조합을 제외하고는 2019년 기준 40% 내외 수준을 유지
 - 산림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보이는데 20% 수준에서 변동
 - 2019년 사업연도 전체 기업 배당성향에 비해 조합법인의 배당성향이 높지 않은 수준
 - 전체 기업 배당성향은 41.25%(코스피), 32.40%(코스닥)³⁾
 - 그러나 배당유형은 조합법인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출자금배당에 비해 이용실적 배당이 크지 않음
 - 이용실적 배당 비율이 50%를 넘는 조합법인 농협, 수협(2017~2018) 등에 그치며,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출자금배당이 주된 배당 형태
 - 특히 조합원에 대한 산업종사 등 의무가 없는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이용실적 배당이 상대적으로 낮음. 신협의 경우 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도 12.1%(2019) 수준에 불과

3) 『브릿지경제』, 「순이익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2020. 4. 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512>, 검색일자: 2020. 6. 10.

<표 II -24> 조합법인 유형별 배당 추이

(단위: 억원, %)

구분/연도	배당성향	총 배당액	배당액	
			출자금배당	이용실적 배당
농협				
2017	47	6,712	3,045 (45.4)	3,667 (54.6)
2018	47	7,454	3,255 (43.7)	4,199 (56.3)
2019	44	8,758	3,812 (43.5)	4,946 (56.5)
수협				
2017	19.4	314	144 (45.9)	170 (54.1)
2018	26.3	350	170 (48.6)	180 (51.4)
2019	39.9	288	151 (52.4)	137 (47.6)
산림조합				
2017	23.5	87	69 (79.3)	18 (20.7)
2018	32.9	100	81 (81.0)	19 (19.0)
2019	26.9	111	89 (80.2)	22 (19.8)
신용협동조합				
2017	38.6	1,290	1,221 (94.7)	69 (5.3)
2018	34.3	1,454	1,382 (95.0)	72 (5.0)
2019	41.4	1,531	1,443 (94.3)	87 (5.7)
새마을금고				
2017	34.0	2,089	1,868 (89.4)	220 (10.5)
2018	37.0	2,578	2,298 (89.1)	281 (10.9)
2019	39.0	2,839	2,495 (87.9)	344 (12.1)

주: () 안은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조합법인 중앙회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



Ⅲ. 외국의 조합법인 지원제도⁴⁾

1. 미국

- 미국의 조합법인(또는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예외조항 운용
 - 협동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배당하는 이용실적 배당(patronage dividend)과 단위당 자본적립배당(per unit retain allocation)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
 - 이용실적 배당은 조합원의 조합 이용실적에 따른 이익의 배당이며, 단위당 자본적립배당은 조합이 조합원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한 후에 상품량에 따라 자본을 배당하는 방식
 - 다만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
 - 예외적으로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거래도 배당할 경우에는 손금산입
 - 이러한 조항의 적용 대상은 조합원을 위한 공동구매 및 판매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
 - 김완석·심태섭(2012)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자본을 조달하며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해당

- 이용실적 배당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순이익을 의미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이익분배, 즉 이용실적 배당에 대하여는 조합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손금산입), 활동 조합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유주 단계에서만 소득세 과세

4) 전병목·류덕현(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이는 협동조합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조합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
- 손금산입이라는 세제혜택을 받는 이용실적 배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김완석·심태섭(2012))
 - 활동 조합원이 이용한 해당 조합의 서비스 양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배금액이 결정되어야 함(해당 조합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결정)
 - 해당 조합이 활동 조합원에 대한 사업 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의하여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단위당 자본적립배당은 조합원이 조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용실적 배당금과 유사하게 손금산입
 - 회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금액이나 물량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이를 해당 조합에 단위당 자본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
- 결국 협동조합 단계에서 조합원 배당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
 - 다만 농업 관련 협동조합의 경우, 국가 또는 비조합원 거래 이익을 배당할 때에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

2. 일본

- 일본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과 그 연합회에 대하여 일반법인과 달리 저율과세를 시행 중
 - 연합회는 농업협동조합의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을 의미
 - 2017년 기준 일반법인에 대한 세율은 30.0%(지방세 포함)인 데 반해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19%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합활동을 지원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800만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9%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합법인에 대한 저율과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체제와 동일한 형태
- 조합법인의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유보소득의 특별공제도 허용하고 있음
 - 이용실적 배당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김완석·심태섭(2012))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그 조합원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급한 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야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그 조합원 등이 해당 사업연도에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조합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조합 중 출자금이 1억엔(소비생활협동조합과 소비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1천만엔) 이하인 경우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허용
 - 구체적으로 법인설립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경우, 유보금액의 32%까지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영국

- 영국은 조합법인(Cooperative)의 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비법인형태의 조직으로 「법인세법」을 따르게 되어 있음(김완석·심태섭, 2012)
 - 조합법인 등에 대한 저율과세, 당기순이익과세와 같은 특례는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목적상 이익창출 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는 금액에 따른 이용실적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금으로 산입
 - 예를 들어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법인에 지불한 월세(rent)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되며, 조합이 보유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결국 영국도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상 특례는 조합원과의 거래에 한해 허용되며 그 방법은 이용실적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으로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례를 제공하지 않음

4. 독일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최근 개정 2006)에 의해 협동조합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 청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
-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은 가능하며, 세무상으로 동 배당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이용실적 배당의 손금산입은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허용
- 세무상으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장비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제품의 가공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수익의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면세

5. 프랑스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 농업이나 공예품 분야의 조합의 경우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게 구성

- 비조합원의 경우,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규정
- 일반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 면제
 -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소득 과세 체계를 따름
- 조합원이 최대주주인 소비자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이용실적 배당을 손급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 가능
- 출자금 배당에 대해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출자금 배당은 경제부에서 고시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이자형태로 지급 가능

6. 이탈리아

- 조합법인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 규정
 - 이는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조합(other cooperatives)으로 구분
- 협동조합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이용실적 배당을 제외하면 일반법인과 동일
 - 이용실적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른 환급(refund)으로 규정하여 손급산입하며, 이를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환급과 구분되는 배당은 기타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출자금 지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제상 혜택은 없음

7. 소결

- 주요 선진국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용실적 배당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득자 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식
 - 법인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기 위해 조합원과의 거래실적에 비례한 배당, 즉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 손금산입을 함으로써 법인세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방법 활용
 -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개인 소득자 단계에서만 과세
 - 반면 우리나라는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고, 조합법인 지원 목적의 저율과세와 당기순이익과세를 선택 중
 - 저율과세는 일반적인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주요국 중 일본에서만 시행
 - 일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일정 과세표준 이하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과 동일하게 운용하여 법인세제의 일관성 유지
 - 저율과세와 당기순이익과세의 혼용은 조합법인 지원제도의 복잡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

- 한편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즉 법인세 과세면제는 호주, 미국 등의 국가에서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 출자금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은 자본투자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농업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며
 - 호주의 경우, 조합법인의 인정 범위를 매해 사업의 90% 이상을 조합원과 거래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자본투자자에 대한 이자 및 배당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

- 우리나라에서 조합원에 대한 지원은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1천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2021년 5%, 2022년부터 9%)와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의 형태로 별도 제공

〈표 Ⅲ-1〉 주요국의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국가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배당 손금산입	
			이용고배당	출자금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국	×	×	○	×
미국	×	×	○	○(농업)

자료: 전병목·류덕현(2017), p. 50.

〈표 III-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Australia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목적을 위한 회사 중 매 해 사업의 90%를 조합원들과 거래하는 경우 조합법인으로 인정 • 조합원들의 소비와 필요에 따른 재화의 구입 •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판매 • 조합원들의 생산품을 저장, 판촉, 포장 및 가공 •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조합원들의 주거 또는 주거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상호 신용을 위해 조합원들로 부터의 예금 및 대출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또는 보너스를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와 배당 지급 가능하며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Austria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관련 특별법은 없으며 1873년 재정(2008년 최근 개정)된 일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별조합의 정관에 의해 자체적으로 규제 - 따라서 이용고 배당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금액이 조합원과의 거래금액의 1% 이내이고 해당사업 연도 초에 이용고배당에 대한 사전 공지가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Belgium	34.0	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근거법은 「Company Code of 1990」이며 가변적 자본과 회원을 가진 회사로 규정 - 세법상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법인 2만 5천개 중 400개에 불과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자본규모보다 적은 경우 불가하며, 가능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National Cooperative Council과 조합법인으로서는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출자금에 대한 이자(이자율 6% 한도)의 배당 소득으로 재분류 금지 ② 원천세의 면제 ③ 법인세 감면 ④ 조합원에 대한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됨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Canada	15.0	2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연방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상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1차 상품을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원료, 기자재 또는 조합원을 위한 생활용품 구매 공급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수행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이전에 고객들과의 계약 시 이용고배당의 가능성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허용되나, 모든 납세자(협동조합을 포함)에게 허용되는 공 통사항 - 비회원고객에게도 이용고배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고객과 비회원고객 사이의 배당률에 차이가 나면 손금 한도를 회원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비회원고객에게 지급한 이용고배당의 합계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자체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처음 50만 달러의 소득까지는 여타 중소기업법인의 세율인 11%를 적용 - 배당 차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감면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이익을 배당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없음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Chile	24.0	2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the article 47 of the LGC)」을 따르는 이윤 공유 목적의 협동 조합을 제외하고 Decree 502(1978 재정, 2002년 개정)에 의해 협동 조합을 규정 - 이러한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 또는 할당 저축에 대한 이자 지급은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되지만, 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이자 및 배당은 소득세 과세 대상임
Czech Republic	19.0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여타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체(sec. 221, par. 1, Commercial Code)이며, 주태조합과 지주 및 신용조합에 대한 특별법만 존재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위임 - 신용조합은 허용되거나 제보험 및 은행 업무는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Denmark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일반적 정의는 「Consolidate Act on Certain Commercial Undertakings(No651 of 15. 6. 2006)」에 의해 규정되거나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기타사항 참조	기타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 경우 협동조합 순이익의 4-6%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증상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결정하고 이에 14.3%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 • 조건 ① - 최소 10명의 조 합원들이 구매 자 또는 공급자 로서 조합법인 의 사업에 참여 • 조건 ② - 비조합원과의 거 래를 통한 매출 액이 전체 매출 액의 25%를 초 과하지 않음 • 조건 ③ - 이윤에서 출자 또 는 투자금 비율에 따라 지급(증상은 행의 정상이자율 을 초과할 수 없 음)하고, 남은 잉여 를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 하거나 재투자 위 해 유보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지방 포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20.0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Estonia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의 일반적 규정은 「the general law on commercial association of 2001」에 따르며 특별법으로는 「신용조합과 건물 및 아파트 조합에 관한 법」이 있음 - 일반법에서 조합의 해산 전까지는 배분할 수 없는 법적 강제적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보상까지 규정하고 있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서 규정된 범위의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서 규정된 범위의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거나 일부 조합(농업 및 가축조합)의 경우 일반법인보다 더 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Finland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일반법(the general law on Cooperatives of 2001)」에 의해 협동조합 관련 강제 적립금, 이용고배당, 투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에서 규정된 범위의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세제상의 특례는 없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거나 일부 조합(농업 및 가축조합)의 경우 일반법인보다 더 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른 배당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France	34.4	3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주요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 농업이나 공예품 분야의 조합에 관한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서 법체계가 복잡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 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 가능하며, 조합원이 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에서 고지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 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에 법인세 면제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제한 			대주주인 소비자 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개인 소득 과세체계를 따름
Germany	15.8	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최근 개정 2006)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청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름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고 손금산입하나,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장비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제품 가공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협동조합의 수익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되는 경우 면세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증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Greece	29.0	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 조합법인의 형성 및 운영을 관장하나, 그리스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직체로 볼 수 없음 - 대표적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법인과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으로 구분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의 잉여(surplus, 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에 대한 이용고배당이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민법상 조합법인의 이익(profits, 비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을 이 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하고 조합법인은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지방조합법인의 감면사항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보한 잉여에 대한 법인세 면제 ② 몇몇 거래에 대한 인지세 면제 ③ 자본축적에 대한 비과세 ④ 다양한 경우의 VAT 비과세 	
Hungary	19.0	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근거한 7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법인으로서 회원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법인의 회원은 자연인 과 법인일 수 있으나 법인 회원의 수는 자연인 회원의 수를 넘 수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가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부조 문화적 도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법인은 fellowship fund에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할 수 있고, 이익금의 6.5%를 한도로 적립금은 면세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Ireland	12.5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893~1978」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 및 「Credit Union Act 1997」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그러나 협동조합의 요건, 업종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 리베이트, 배당, 보너스 등은 손금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주 거주지가 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Italy	27.4	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서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 (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 조합(other cooperatives)으로 구분됨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환급(Refund)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산입 - 환급은 배당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조합의 경우에 한해서 출자금 지분에 따라 배당할 수 있지만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Japan	22.6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poration tax law Sch. 3에 열거된 조합법인과 연합회(예, 농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19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이용고에 따른 배당 손금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8백만엔까지의 소득은 19%로 과세하므로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세율은 기준 조세 체계 안에 있음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증상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Luxembourg	22.5	29.2	- 협동조합 설립 근거법은 「the law on commercial companies of 1915」이며, 기본적인 사항 이외의 적립금, 이용고배당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하지만,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비과세 - 농협 관련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농임업 농장과 기계의 공동사용과 농산품의 판매 또는 가공에서 발생한 이익에 한해서만 비과세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 사업연도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경우유보금액의 32%까지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증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Mexico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Cooperativas)」과 「상업회사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 - 기본적으로 공유된 노동과 서비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상업화, 유통, 저장 및 수송을 위해 개인들에 의해 조직된 사업체로 규정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손금 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다음의 조세유인이 시행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기관에 의해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조합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모든 소득은 조합원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2006년 개편) - 2014년부터 발생하는 조합법인 소득에 한해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2년간 유보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3년제 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 시행(2014개편)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Netherlands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구체적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상호보험협동조합(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mutual))에 대해서는 특정 규제가 적용되거나 특별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한해 이용고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허용 - 이용고배당 이외의 회계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인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과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규정
New Zealand	28.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 Company Act 1996」에 따라 협동조합 요건을 갖춘 회사가 「Company Act 1992」에 의해 법인화된 경우, 조합법인은 60%의 조합원이 현재 재화와 용역을 조합법인에 공급하거나 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어야 함 - 농업 분야부터 택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용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조합법인의 과세는 일반법인과 동일 - 조합과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리베이트는 개인소득세 과세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Norway	25.0	25.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긴 물 및 주택조합과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용고 배당, 투자자금에 대한 보상 등 적 율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 적 율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 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이용고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5년 만기 국채 이자율보다 3%p 이상 높지 않은 이자율로 보상 가능하며, 세무상 처분은 일반법인과 동일	- 영리조직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고 세법상 비영리 조직으로 구분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비교 사례고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Poland	19.0	19.0	- 협동조합일반법과 신용조합, 은행 조합, 농업생산자단체, 주택조합, 사회적 조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기본사항을 규정 - 협동조합은 법정 적립금을 관리 하고 조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 협동조합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배당 가능 하나 세계상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Portugal	28.0	29.5	- 회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가변적인 자본을 가짐('cooperative code 1996.) - 활동 영역은 소비, 교육, 농업, 신용, 주거, 생산, 공예, 서비스, 문화, 교육, 공공부조 등 다양	없음	아니오	- 이용고배당 여부는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다름: 교육 협동조합의 경우 연간 이익의 50% 까지 가능하지만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housing and social solidarity) 배당이 불가능 그러나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 배당금이 조합원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연간 이익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일 반적인 규정이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 배당이 불가 하며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 세계상의 혜택은 조합원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며, 일부 협동 조합의 경우 20% 만 면제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Slovak Republic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Commercial code §221)」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여타 특별법은 없음 - 최소 조합원 수를 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강제 적립금 등이 규정되어 있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은 가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Slovenia	17.0	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the Act on Cooperatives(Zakon ozadruĝah))」에 의해 최소 조합원 수 3명(법인회원 포함)으로 설립 가능하며 주로 농업 분야에서 활동 - 조합원과의 거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 조합원이 허용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재무활동도 가능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배당이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Spain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문을 제외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법은 없으며 14개 자치지역에 적용되는 협동조합법과 특정지역으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협동조합법(1999)」에 근거하고 있음 - 조합원들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경제적 활동에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음 	20.0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준비금으로 잉여금에 조합원에 배분 가능하나 세제상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상 이익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 내역에 따라 연 6% 또는 별적자율 한도로 지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법인의 이익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합원 거래에 의한 이익과 ② 자본이득을 포함 조합원 이외의 자와의 거래에 의한 이익으로 구분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과세세율	당기순이익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Sweden	22.0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모든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연합회에 관한 법률(the law of economic associations)」에 의해 규제됨 - 협동조합 또는 경제적 연합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둠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합원이 특정 과세연도에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한 경우 한하여 이용고배당, 할인 금액의 손금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과 ②의 값이 음수이더라도 ①에는 20%를 적용하고, ②에는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 합산된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급되지는 않고 10년간 이월 공제받을 수 있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Switzerland	6.7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방법(Swiss Code of Obligations)」에 의해 설립되지만 「스위스 지방법」에 따라 설립되기도 함 - 자본금이나 조합원 수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과 주의 법인소득세 산정과 정에서 모두 이용고배당 및 할인금액을 상업적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배당 손금산입 이외에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Ⅲ-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Turkey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일반법(the Cooperative Act)」에 의해 설립되며, 주요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지원에 두고 있음 - 최소 7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만을 하고 적립금이나 여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고에 따라 배분 가능하고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만을 하는 협동조합에 한하여 이용고배당 손금산입이 가능함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United Kingdom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는 금액에 따르는 이용고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금으로 산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규정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가능한 세법상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 목적상 이익 창출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법에 지불한 월세(rent)와 조합원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하며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표 III-2>의 계속

국가	2017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순 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증앙	지방 포함				이용고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United States	32.9	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및 판매 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 - 다만 이용고배당 등 추가적 손금산입 항목으로 세계상의 혜택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법인의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이용고배당을 손금으로 인정 (IRC§1388(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관련 협동조합에 한하여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을 손금으로 허용 (IRC§1382(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에 단위당 자본적립배당 (per unit retain allocation)은 해당 조합원을 대신 해서 조합법인이 판매한 상품량에 기초하여 그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환 가능 증서도 배당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손금산입(IRC§1388(f)) 미국 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과세대상이나, 농업 관련 조합에 한하여 해당 이익을 배당할 경우 손금으로 처리 (IRC§1382(c)(2)) - 조합원들의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 (IRC§1385)

자료: 전병목·류덕현(2017), pp. 51~69, <표 III-2>를 수정

IV. 타당성 분석



IV. 타당성 분석

1.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목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 조항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음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편제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분류되어 있어 공익적 역할 수행을 목적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음
 - 동 목적에 대한 검증은 전병목·류덕현(2017) 등에서 심층적으로 검증되었듯이 조세특례대상 조합법인의 설립 취지나 실질적 사업내용 등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 2017년 정부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동 제도의 목적을 조합원과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 실정
 - 즉 조합법인 활동의 활성화가 참여 조합원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므로 동 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로 인식

- 기존에 제시된 두 가지 정책목적, 즉 공익적 기능 수행과 조합원 지원을 기준으로 정책목적의 타당성과 달성 가능성을 평가
 - 조합원 지원 기능의 경우 조합원이 사회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연계성도 점검

- 먼저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수행 여부는 조합법인을 규정한 개별법상 설립 취지와 기능(사업 내용)을 통해 분석 가능
 - 이러한 조합법인의 목적 또는 활동이 세법 등 기존 법률체계에서 정의된 공익 기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 공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제혜택 대상 공익사업이 존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정의를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
 -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넓은 공익의무 중에서 교육, 학술, 자선 등으로 범위를 축소
 - 이는 사회일반의 이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 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하고 이곳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 종교, 학교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사업, 의료법인 사업, 법정기부금 사업,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을 받은 자의 비친목·비영리 운영사업 등

공익 관련 법률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들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를 통해 기존의 공익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분석
 - 구체적으로 세법에서 정의한 종교, 교육, 사회복지(자선), 의료, 기부금 기반 사업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평가

- 둘째, 조합원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구성원 지원인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연계된 것인지 검토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인바, 조합원 자격요건을 통해 지원대상 계층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를 평가

- 조합법인의 공익적 목적 수행 여부와 구성원 자격요건과 지원대상의 연계 정도를 개별 조합법인별로 평가

- ① 「신용협동조합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취지는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은 구성원에 대한 제약적 규정이 있을 때 지원대상 계층과의 연계가 가능하나, 조합원의 자격(「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은 조합의 공동유대⁵⁾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특정 계층과의 연계성 없음
 - 사업 내용 측면에서도 공익적 기능이 있는 것은 복지사업 정도이며, 나머지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 기능이 대부분
 - 만약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고려가 있다면 본래의 업무인 신용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많은 여수신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역할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으로 판단됨

- ② 새마을금고도 이를 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그 목적이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공익적 기능의 수행과는 관계없음
 -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 등이 있으나 공익적 기능으로 보기에 다른 금융기관과 차이 없음
 -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한도 조항 등으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운 구조
 - 회원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지만 회원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음
 - 거주 요건이 있지만 이는 거주 지역에 새마을금고가 있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므로 제한요건으로 보기 어려움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므로 특정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도 없음

5)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로, 지역, 직장, 단체 등이 가능

- ③ 농협(축협 포함) 역시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농업 및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특별히 공익적 기능과 연계되지 않음
 - 농협의 사업내용 역시 조합원들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 사업, 신용사업 등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기능과 연계는 없음
 - 다만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농업인 또는 축산업종사자로 제한되어 있어, 식량 자원 등 1차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 유지 목적과 함께 동 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 존재
 - 농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 지원제도들과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이 설정된 것으로 평가 가능
 - 준조합원제도로 지원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대상이 조합법인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나, 이 역시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산업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 ④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취지 역시 산업지원을 통해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음
 - 사업 내용 측면에서도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이 중심으로, 「공익법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 기능과의 연계성은 없음
 - 다만 수산업 자체가 1차 산업으로서, 동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이를 위한 산업종사자 지원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들 중의 하나로 해석 가능
 - 조합원의 요건은 어업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수협과의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지원대상 조준 관점에서 완전하지는 않음

<표 IV-1>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개별법상 설립 취지 및 사업내용

구분	설립 취지	기능(사업내용)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u>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u>	-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관련 부대사업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 <u>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u>	-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 위탁사업, 국가나 공공단체 위탁사업, 그 외 주무부장관 승인사업 - (밀줄 친) 복지성사업의 투자 한도는 (출자금+적립금)의 50%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 (지역농협)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u>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u> - (지역축협) 조합원의 <u>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u>	- (지역농협)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복지후생사업,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 위탁사업, 관련 부대사업 - (지역축협)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 운영, 다른 경제단체,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 위탁사업, 관련 부대사업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u>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u>	-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복지후생사업, 운송사업, 어업통신사업, 국가, 중앙단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다른 경제, 사회, 문화단체와의 교류 협력, 다른 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대리, 대외무역, 차관사업, 관련 부대사업, 중앙회 회장 승인 사업

<표 IV-1>의 계속

구분	설립 취지	기능(사업내용)
<p>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 조합법」)</p>	<p>- 중소기업자의 <u>경제적인 기회 균등을</u>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복돋우어 <u>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u>을 꾀함을 목적</p>	<p>-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시설 조성·관리 및 운영,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 및 사업 분야 침해에 대한 조정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 수탁 기업체의 거래 알선과 조정,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시험 연구·사업 자금 대부, 알선, 차입, 사업에 대한 지도, 조사, 교육 및 정보제공, 단체적 계약 체결, 수출과 수입, 복리후생, 국가, 지자체 등 위탁사업, 해외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리, 주무관청 승인사업, 「하도급거래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공제사업, 관련 부대사업</p>
<p>산림조합 (「산림조합법」)</p>	<p>-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u>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u>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p>	<p>-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신용사업,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공제사업, <u>복지후생사업</u>, 다른 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위탁사업, 다른 법령의 규정 조합사업, 관련 부대사업, 산림청장 승인사업</p>
<p>엽연초생산 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p>	<p>- <u>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u>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p>	<p>-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u>공동이익 및 복지후생사업</u>,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 위탁사업, 다른 법령 규정 조합사업, 관련 부대사업,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사업</p>
<p>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 조합법」)</p>	<p>-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u>조합원의 소비자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u>에 이바지함을 목적</p>	<p>- 물자의 구입, 생산, 가공공급, 공용이용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생활개선 및 교육문화사업, 보건, 의료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연합회 위탁 사업, 관련 부대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p>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2020. 4. 8.

-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양한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가능
 - 기존의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상 공익적 기능과는 관계없이 대중소기업의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행해지던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해 가능
 - 지원 목적이 중소기업 활동 활성화이므로 협동조합 구성원에 대한 요건은 큰 의미가 없음
 - 조합원 요건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면서,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도 특별조합원으로 허용

- ⑥ 산림조합의 설립 취지는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산업 종사자 지원 목적으로 이해되어 공익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 내용도 조합원인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 지원을 통해 산림조합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이는 농수산업과 같이 1차산업인 산림산업의 국내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조합원에 대한 규정 역시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준조합원제도를 통해 관련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에 대한 지원이 산림소유자 또는 임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

- ⑦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설립 취지 역시 잎담배 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산업 종사자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 중
 -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상 공익적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1차산업인 잎담배 경작자 지원정책임
 - 다만 담배의 원료로 이용되는 잎담배의 경우, 국내경작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
 - 잎담배 경작업을 국내 식량 기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림수산업과 같은 유형의 1차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 조합원의 요건 역시 담배 제조업자와 경작계약을 통해 연초경작을 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곧 연초경작자에 대한 지원으로 귀결
- ⑧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이로 인한 국민복지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공익활동과는 연계성이 약하며 단순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판단됨
-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상 공익보다는 소비자들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 조합원 역시 주거지 또는 근무지가 있는 생협에 아무런 제약이 없이 가입 가능

〈표 IV-2〉 조세지원 대상 협동조합의 조합원 요건

구분	조합원	비고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의 설립 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2항은 조합의 직원, 조합원의 가족 등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u>지역농협</u>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20조(준조합원) ①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u>지역축협</u> 제105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경영법인, 품목조합도 조합원 가능

<표 IV-2>의 계속

구분	조합원	비고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p>(지구수협) 제2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구별 수협의 구역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만이 있는 어업인이 그 외의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p> <p>제21조(준조합원) ①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별수협의 구역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해양수산 관련 단체 2.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p>(수산물가공 수협)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여야 한다.</p>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p>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p> <p>② 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p>	- 조합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 중소기업 관련 기관 단체 등은 특별조합원 가능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p>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p>제19조(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p>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자: 2020. 4. 8.

- 협동조합별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 그리고 조합원 요건 등을 분석한 결과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정책목적과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 타당성에 차이 존재
 - 8개 유형의 조합법인의 경우 설립 취지 및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음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이 조합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법부의 인식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은 조합원 요건의 타당성이 중요한 역할
 - 즉 조합법인 조합원이 기존의 지원제도들에서 포섭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기존의 조세 지원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에 대한 지원은 기존 1차산업 또는 1차산업 종사자 지원제도와 유사
 - 다만 엽연초조합의 경우, 생산자는 지원하고 담배소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억제하는 정책적 비일관성 존재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유사한 목적
 -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은 기존 조세 지원정책과의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지원제도
 - 새로운 지원제도 유형인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의 경우 조합원 요건의 제한도 거의 없어 특정 지원대상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
 - 동 유형의 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해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약함.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과의 연계성 없기 때문

- 결론적으로 지원대상 조합법인들의 경우, 공익적 목적 없이 조합원 지원을 위한 법인으로, 이들에 대한 조세특례는 1차산업 또는 중소기업 기반 조합원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의 특정화 없음
 -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대상은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이며 엽연초조합의 경우 조세정책상 비일관성이 문제
 - 조합법인 지원제도를 1차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이해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 및 낮은 세무조정 부담을 허용치 않는 중소기업 등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 존재

〈표 IV-3〉 조합법인의 목적 및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

유형	(정책목적) 공익성	대상 설정 타당성		기타
		기존 제도 유사성	대상 설정 특정화	
신협	×	×	×	
새마을금고	×	×	×	
농협	×	○(농업, 축산업)	○	농축산업인 대상
수협	×	○(수산업)	○	수산업인 대상
중기협동조합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대상
산림조합	×	○(임업)	○	임업인 대상
엽연초협동조합	×	△(농업)	○	연초경작자 대상, 담배는 추가 과세 중
소비자생활협	×	×	×	

주: 조합법인의 기본적 정책목적은 조합법인 활성화이며 공익성의 판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음

2. 정책수단의 적절성

-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지원의 적절성은 조합법인 활성화 또는 조합원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
 -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의 목적, 즉 조합법인의 활성화, 조합원에 대한 지원, 공익적 활동 촉진 등을 달성하는 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효과적인지 평가

가. 조합법인의 활성화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2단계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먼저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관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동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춤

- 그러나 2단계로 세부담을 낮추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음
 - 조합법인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2가지 단계의 법인세 부담 축소제도를 시행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복잡성을 유발하는 문제 존재
 - 과거 당기순이익 과세에서 정상적인 세무 조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완화는 상대적으로 조합법인의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
 - 현재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9%, 12%(20억원 초과분)는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10%/20%(2억~200억원)/22%(200억~3,000억원)/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조합법인의 규모(과세표준)가 커질수록 더욱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
 -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 절감 폭이 1%p~13%p로 증가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은 조합법인에 투자한 조합원 출자금의 수익률을 상승시켜 조합법인의 규모 및 활동 증가를 유도할 것임
 - 또한 조합법인의 지배구조는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져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소규모 출자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한 구조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업연초생산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출자를 조합원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투표권은 출자좌 수 또는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표로 운영
 - 이러한 운영구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조합원(산업종사자, 출자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효과적일 것임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는 낮은 세부담과 1인 1표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동분야로의 인적·물적 집적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과 납세협력비용(즉 세무조정비용)은 다른 중소기업 등에 비해 조합법인 출자자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요인
 - 특히 1인 1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출자자본의 크기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저소득자들의 참여 유인이 높은 구조

<표 IV-4> 개별 협동조합의 의결권 행사구조

유형	의결권 및 선거권
신협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① 조합원은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제한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⑤ 회원은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농협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수협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중기협동조합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 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산림조합	제24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多少)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 전 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업연초협동조합	제16조(총회)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하 생략)
소비자생활협	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http://www.law.go.kr/LSW/main.html>, 2020. 4. 8.

따라서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는 조합법인 활동 활성화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 조합원의 참여 유인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효과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목표
 - 즉 법인세 부담의 축소가 조합법인의 세후수익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달성된 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제도적 관점에서 평가

- 기본적으로 조세특례대상인 조합법인들 중 1차산업, 즉 농림축산업 등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회원에 대한 최대봉사의 원칙을 모범에서 규정
 - 즉 조합과 중앙회는 해당 사업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조합의 활성화가 조합원의 편익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
 - 구체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해당되며 동 조합들은 조합원인 1차산업 종사자들의 생산·유통·판로·신용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을 위해 활동
 - 그 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이러한 조항 없이 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을 지원
 - 모범의 규정이 없지만 조합원들의 생산활동 등을 지원하는 조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나머지 조합들은 배당 등을 통해 조합원을 지원하는 구조

<표 IV-5> 조합법인 유형별 조합원 지원

구분	생산·유통 등 활동지원	배당 등 금전지원
신협	×	○
새마을금고	×	○
농협	◎	○
수협	◎	○
중기협동조합	○	○
산림조합	◎	○
엽연초협동조합	○	○
소비자생활협	×	○

주: ◎, ○, ×는 각각 활동지원 강도가 높음, 보통, 거의 없음을 의미

- 조합원의 활동 지원 측면에서 1차산업 생산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배당까지 시행하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이 우위에 있으며, 사업지원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 다음 순위
 -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은 조합 활동을 통한 조합원 지원보다는 배당 등을 통한 금전적 보상 중심 형태이므로 이익금 처분에 관한 규정이 중요

- 배당을 통한 조합원 지원 기능은 조합법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나, 배당 방법의 차이로 인한 지원 기능 차이를 분석
 - 조합법인들의 이익잉여금 처분에서 공통적으로 손실금의 보전을 먼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후 이익금의 처분에서 이용실적 배당과 납입 출자액 배당을 병행

- 조합원에 대한 배당정책의 두 가지 기준 중 이익금에 기여한 활동 중심의 이용실적 배당이 단순 납입 출자액 기준의 배당보다 조합원 지원에 효과적
 - 조합법인 자체는 영세 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동협동조합을 규정한 모법에서 의사결정권을 납입 출자액 또는 출자좌 수에 관계없이 1조합원 1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 이러한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감안할 때 이익금에 대한 배당 역시 조합의 이익창출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당하는 이용실적 배당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합원 지원 기능을 평가할 수 있음

- 각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모법에 따르면 이익금 처분방식에도 차이가 존재
 - 대표적 1차산업 생산자 단체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이익금 배당에 있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최우선 순위로 배당
 - 납입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정관에서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시행
 - 3순위로 준조합원에 대한 사업이용실적 배당 시행
 - 이러한 사업이용실적 중시 배당방식은 1조합원 1의사결정권 제도와 함께 납입 출자액이 적은 영세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결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즉 조합법인의 수익 배분이 기존의 납입 출자액 격차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표 IV-6〉 조세지원 대상 조합법인의 이익금 처분 규정

구분	이익금의 처분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53조) - 조합은 손실금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금 처분 불가 -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특별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납입 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며 이 경우 정관에 따라 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 병행 가능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제35조) - 금고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음 - 배당은 납입 출자와 수에 비례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의 비율에 따른 배당을 병행 가능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 -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 못함 - 잉여금 배당은 정관에 따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1조) - 지구별 수협은 손실 보전, 법정적립금, 지도사업이월금, 임의적립금 공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 불가 - 잉여금 배당은 정관에 따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1조) -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 불가 - 잉여금 배당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실시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제56조의3) - 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하기 전에는 잉여금 배당 불가 - 잉여금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정관이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순으로 실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구체적 잉여금 처분 규정 없음 - 조합 정관에 조합원에게 조합비 및 경비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자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동법 제15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0조) - 조합은 손실을 보전 및 법정적립금 적립 이후 잉여금 배당 가능 - 잉여금 배당 중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출자금 배당 비율은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실시 -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배당 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차산업 생산자 협동조합과 유사한 이용실적 배당 활용을 강제하는 제도 운용
 - 이용실적 배당을 총 배당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면서 사실상 최우선순위 배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납입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준은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제한하여 조합활동 활성화에 중점
 - 다만 수혜 계층인 조합원 요건이 거주 요건 이외 제한이 없으므로, 조합원이 사회적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는 존재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납입 출자금 배당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실적 배당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먼저 납입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이용실적 배당은 부가적인 역할 수행
 - 이는 조합법인의 이익금이 조합원에 배분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배당금의 분포는 매년 이용실적에 따라 배당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용실적 배당보다 편중될 가능성 높음
 - 이러한 납입 출자금 중심 배당구조는 납입 출자금에 관계없이 1조합원 1의 사결정권 구조를 채택하여 조합원 참여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취지에 합치하지 않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경우, 모법에서 이익금 배분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1차산업 생산자 조합의 경우와 같이 이용실적 배당과 납입 출자금 배당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
-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의 운용 목적을 감안할 때 이용실적 배당의 활용 정도는 영세 조합원 지원 정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
- 이용실적 비례배당은 공급자로서의 자본투자액보다 협동조합 활동의 수요자로서 당년도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배당으로, 영세 조합원을 배려하는 정책
 - 주요 선진국들도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 이용실적 비례배당제도 운용 상황에 기반한 조합원 지원제도로서의 조세특례의 적절성 수준은 이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합법인의 경우 가장 높음
- 농협, 수협,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신협, 중소기업협동조합

- 다만 소비자생협의 경우 조합원의 지원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활동 증가 자체가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배당 정책의 중요성이 높지 않음

〈표 IV-7〉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규정

배당 유형	조합법인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시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용실적 비례배당 병행 허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배당 관련 미규정	업연초생산협동조합

- 결론적으로 조합원 지원은 조합법인 활성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일반법인과 별 차이 없음
 - 직접적인 조합원지원제도인 이용실적 비례배당에 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실적은 일반법인과 차이 거의 없음(〈표 IV-8〉 참조)

다. 공익적 활동

- 조합법인들의 활동에서 공익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류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음
 - 실제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지원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고 사업 내용도 이러한 조합원 활동 지원 등에 초점
- 따라서 세법에서 정의하는 종교, 교육, 자선, 사회복지 등의 관점에 부합하는 조합법인의 활동은 거의 없고, 비슷한 사업이라도 조합원 대상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
 - 조세특례제도도 공익 활동을 유도하는 목적보다는 조합법인 자체의 비용 절감과 수익성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즉 공익적 관점에서는 조합법인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없음

- 각 협동조합들은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국가 정책목적 또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평가
 - 이는 앞서 살펴본 정책대상 설정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정책과 유사한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1차산업 종사자(농림수산업 종사자), 경제활동의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다른 유형의 조합법인들은 조합활동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설정에서도 공익 또는 기존 국가정책과의 관련성이 약함

- 구체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실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움
 - 금전적 지원 수준을 보여주는 조합법인의 배당성향은 일반 상장법인의 32.4%(코스닥)~41.3%(코스피)⁶⁾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26.9%(산림조합)~44.0%(농협)에 머물고 있음
 - 조합원과의 거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이용실적 배당 비율도 농협과 수협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활용
 - 결국 일반 상장법인에 비해 배당을 통해 조합원을 지원하는 기능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음

<표 IV-8>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현황

(단위: %)

배당 규정	조합법인(2019)		
	조합법인	배당성향	이용실적 배당 비율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농협	44	56.5
	수협	39.9	47.6
	산림조합	26.9	19.8
	생협	n.a	n.a
이용실적 비례배당 병행	새마을금고	39.0	12.1
	신협	41.4	5.7
	중소기업협동	n.a	n.a
배당 관련 미규정	엽연초생산	n.a	n.a

자료: 각 조합법인 중앙회

6) 2019년 사업연도 전체 기업 배당성향은 41.25%(코스피), 32.40%(코스닥), 『브릿지경제』, 「순이익 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2020. 4. 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512>, 검색일자: 2020. 6. 10.

- 비금전적 지원은 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활동을 포괄하는데, 이는 조합법인의 비용구조를 통해 추정 가능
 - 전병목·류덕현(2017)에 따르면 조합법인의 지출구조에서 조합원을 위한 활동 또는 공익적 활동이 크지 않았음
 - 제 V 장의 효과성평가에 시행한 비교(비특례)법인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웠음
 - 이는 조합법인의 비용지출구조가 유사한 비특례법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특별히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활동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 소극적인 비교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선정하더라도 조합법인의 과세표준별 분포는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익구간에 주로 분포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수혜 줌
 - 중소기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간 균형 있는 경제활동을 위해 지원 필요성 인정
 - 중소기업에 비해 더 큰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 미약

〈표 IV-9〉 중소기업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분포(2018)

(단위: %)

과세표준	중소기업			조합법인		
	한계세율	중소기업 수	구성비	한계세율	조합법인 수	구성비
0원	0	299,307	46.9	0	397	9.1
0~2억원	10	255,278	40.0	9	1,150	26.4
2억~200억원	20	83,534	13.1	9~12	2,811	64.5
200억원 초과	22~25	162	0.0	12	3	0.1
합계	-	638,281	100.0	-	4,361	100.0

- 공익적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세특례제도 운용은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즉 조합원)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의 조세특례제도의 적절성은 이용실적 비례배당에 대한 특례가 바람직
 - 기존의 협동조합의 납입 출자금 기준 배당 규정 활용을 감안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이익금을 취약 조합원 계층에 공평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므로, 보다 직접적인 이용실적 비례배당이 바람직

- 그러나 여전히 조합원을 취약계층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협동조합 유형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특례의 유효성이 낮음
- 결론적으로 지원수단의 적절성 평가결과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익성 및 조합원 지원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제도임을 시사
 - 조합원 지원 기능은 제도의 틀은 일부 갖추어져 있으나 활용은 제한적이라 한계
 -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비해 큰 규모임에도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 존재

3. 지원 수준의 적절성

- 조세특례를 통한 조합법인 지원 수준의 적절성은 두 가지 관점의 비교에서 평가 가능
 - 국가 간 비교 관점과 국내 다른 유형의 법인에 대한 지원 형태와의 비교
- 국제적인 비교는 지원 수준에 대한 비교 관점보다는 과세체계의 비교에 가까움
 - 과세체계의 비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원에 대한 과세체계의 구성이 누구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
 - 만약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지원을 시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합활동 지원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 그렇지 않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다면 협동조합을 통한 조합원 지원이 주목적이기 때문
 - 구체적으로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조합원에 대한 이용실적 비례배당 등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형태이며, 조합법인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는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부담을 낮추어 주는 형태
 - 우리나라는 조합법인에 대해 세무조정 부담 축소와 함께 저율과세로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른 많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용실적 비례배당의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 단계에서의 세부담 없이 조합원에게 이익이전이 되는 방식 선택

- 조합원 지원이 목적이라면 보다 직접적인 이용실적 비례배당의 손금산입이 조합 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많은 지원이 가능
 - 우리나라는 저율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므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조세지원 수준이 낮은 편

〈표 IV-10〉 주요국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방향

국가	조합 지원		조합원 지원(손금산입)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이용실적 비례배당	출자금 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 ¹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 ²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국	×	×	○	×
미국	×	×	○	○(농업)

주: 1. 일정 조건 농업협동조합은 면세
 2. 일정 조건 농림협동조합은 면세

- 조합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제도를 보유하고 있어 주요 국가들과 지원 수준 격차는 축소
 - 구체적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1천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2021년 5%, 2022년부터 9%)와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2021년 5%, 2022년부터 9%) 제도 운용 중
 - 해당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유형
 -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제도는 적용 대상 조합원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소득 수준별 누진과세라는 소득세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 야기
 - 주요 국가들은 조합원의 이용실적 비례배당에 대해 손금산입함으로써, 동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개인소득 과세 단계에서 과세

<표 IV-11> 협동조합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지원대상	우리나라	주요국 ¹⁾
법인단계(조합) 감면		
- 법인세	○	×(일본 저율과세)
- 이용실적 배당 법인세	×	○
개인단계(조합원) 감면		
- 배당소득세 비과세	○	×
- 이자소득세 비과세	○	×

주: 1)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조세지원 수준은 개인소득 단계에서의 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요 국가와의 격차는 줄어들어
 - 그러나 동일한 조세부담 감면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제도를 구성해 운용하는 문제점 존재
 - 구체적으로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율과세를 분리하여 운용하기보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세율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필요

- 조합법인, 궁극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국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과세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할 수 있음
 - 즉 개별 법인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비례하는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
 - 이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 유형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인정받고 있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등
 - 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른 공익활동 법인들에 대한 과세수준과 비교하기 위함
 - 주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1차산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다른 조세 및 재정정책 등을 통해 다양하게 지원받고 있는 계층

- 비교 대상 법인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은 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조달 측면에서 기부자, 출연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비영리단체인 기부금 모금단체가 기부를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소득세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
 - 총 소득의 일정 범위 내에서 7)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공제
 -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를 면제
 - 공익법인의 증여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그 활동을 지원하고, 상속자의 상속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공익법인으로의 상속 유인을 높임
- 공익적 활동을 하는 법인과 비교 결과, 조합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조합법인 조합원의 경우, 조합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세율 1%p(2억원 이하), 8%p(200억원 이하), 10%p(3천억원 이하), 13%p(3천억원 초과)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 단계에서 면세되어 최저 14%p 원천소득세율을 감면받고 있어 상당히 높은 지원 수준을 보임
 -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의 감면 정도는 1억원 미만의 경우 최저세율인 10% 수준
 - 기부자의 경우,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5%를 받음
 - 전체적으로 10~15%p 수준의 조세지원 시행
 - 비영리 및 공익 관련 활동으로 규정된 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보다 느슨하게 규율되면서, 개인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조합원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과중한 지원으로 판단

〈표 IV-12〉 세제지원 대상 법인별 사업대상과 조세지원제도

구분	조합법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자금조달	조합원 출자금	기부, 증여(상속)	기부, 출연(증여, 상속)
지원대상	조합원(이용자)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
지원제도	출자금 배당 비과세 법인세 저율과세	기부자 세제 혜택 고유목적사업용 이익 법인세 비과세	출연자 세제 혜택 기부자 세제 혜택

자료: 전병목·류덕현(2017)

7) 법정기부금은 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을 때(소득의 10% + Min(소득의 20%, 종교단체 이외 기부금), 기타 기부금은 소득의 30%가 공제 한도

- 식량안보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시행 중(「조특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 중에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또한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세하고, 그 이상은 5%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외 소득은 5년까지 50% 감면. 그리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은 개인소득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합원 수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의 배당소득 역시 1,200만원까지 면세, 그 이후 5%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식량자급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식량작물재배업과 그 외 농업 및 어업의 일정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이러한 지원 수준 구조는 필수재화의 관점이 추가되어 더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원 수준의 상대적 균형 유지

- 결론적으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은 외국과의 비교, 국내 다른 공익단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외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고, 그 활동결과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
 -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이외에도 당기순이익과세를 통해 세무조정 비용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합법인 자체를 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개별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과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움

- 외국은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형태이므로, 법인세율 수준의 지원(즉 법인단계 세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이 이루어짐
-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법인세 부담이 남아 있으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짐

- 만약 동 제도를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
 - 현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을 통한 조합원 지원은 조합의 이용실적 배당금 결정 관행 및 매카니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조합법인 배당 및 이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는 소득 수준별 과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개선할 필요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수준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보다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
 - 필수적인 식량자원 확보 등을 위해 식량재배작업업 소득과 일정 수준 내의 농업,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높은 수준의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음
- 지원 수준의 하향화 방안으로는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배제, 기존 조세지원제도의 일률적 단순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소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조세지원의 형평성 관점에서 고려 가능
 -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 현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는 세무조정 부담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인식과 지원 수준 감축을 위해 세무조정 부담의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

4.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 조세특례 대상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유사 재정사업은 3건 정도로 파악
 - 행정안전부의 지역금융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등으로 구성
 - 예산 규모는 2019년 252억 원 규모에서 2020년 272억 원 수준에 그침

-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 지도, 농협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은 중복성이 없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등은 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조세지원과 중복성 존재
 - 행정안전부 사업은 중앙정부의 금융기관 건전성 지도 관련 사업이며 농림축산사업부 사업은 농협의 사업구조조정 관련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또는 조합원 지원의 조세지출 목적과의 상당한 거리
 - 농림부의 농협사업구조개선지원은 사업구조 개편 시 부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이자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
 - 지역조합 지원 또는 조합원 지원과의 연관성 약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중앙회 운영비 지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중앙회 운영비 지원은 정책개발비, 인건·경상비 보조로 중복성 약함
 - 조합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지원 등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조합법인 과세특례와 중복적이나,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예산 규모(2020년)는 56.8억 원으로 크지 않음

- 개별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운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달리, 관련 재정사업들은 금융 규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조합들의 공동사업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목적으로 상호 중복성은 약한 것으로 판단

<표 IV-13>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단위: 백만원)

세부 재정사업명	예산 규모		중복성 평가
	2019	2020	
지역금융활성화 (행정안전부)	90	90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 신뢰성 회복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도감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아님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2,519	11,962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시 부족자본금 증당 금융채권의 이자 비용 지원으로 농협 활동 또는 조합원 지원 목적과의 연관성 높지 않음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중소벤처기업부)	12,575	15,196	중소기업중앙회 보조(정책개발, 인건·경상비 보조 등)와 공동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56.8억원, 2020)은 중복성 있으나 금액 규모는 크지 않음
합계	25,184	27,248	

자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개요, 2020.



V. 효과성 분석



V. 효과성 분석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효과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
 - 첫째,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 조합법인과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유사업종 유사규모 법인의 성과지표를 비교함으로써 과세특례제도의 효과 분석
 - 둘째, 2015년부터 적용된 세율 인상(과표 20억원 초과 시 12% 적용, 기존 9%)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세율 변화에 따른 과세특례 법인의 경영성과 효과를 분석
 - 마지막으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효과를 정부재정지출과 비교함으로써 분석

1. 비특례법인과 비교분석

가. 자료

- 조세특례 조합법인의 성과를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법인과 비교분석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비교집단을 임의추출하여 분석
 - 2018년 기준 특례 조합법인 4,361개 중 2,418개 법인에 대해 비교법인 추출
 - 유사업종, 유사수입금액 규모의 비교법인 추출 한계로 모든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만큼 비교법인을 추출하지 못함
 - 비교법인이 추출된 특례 조합법인의 비율은 49~58% 수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등 6개 유형의 조합법인은 대부분 조세특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인형태가 비교법인으로 많이 추출
 - 비교분석은 모든 특례법인이 아닌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의 비교법인이 매칭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수행

<표 V-1> 특례법인 수와 비교법인 수

(단위: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례법인 (전체)	계	4,558	4,560	4,502	4,397	4,418	4,361
	6개 유형 ¹⁾	2,919	2,900	2,799	2,726	2,779	2,501
	기타	1,639	1,660	1,703	1,671	1,639	1,860
특례법인 (매칭된 표본) ²⁾	계	2,247	2,519	2,526	2,540	2,512	2,418
	6개 유형	1,161	1,376	1,345	1,420	1,390	1,240
	기타	1,086	1,143	1,181	1,120	1,122	1,178
비교법인	계	2,247	2,519	2,526	2,540	2,512	2,418
	6개 유형	72	39	47	49	30	21
	기타	2,175	2,480	2,479	2,491	2,482	2,397

주: 1) 6개 유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을 의미

2) 매칭된 표본은 유사업종, 유사수입금액(95~105%)인 비교법인이 추출된 특례법인으로 구성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비교법인은 특례법인에 비해 과세표준 수준이 낮은 법인들의 비중이 높음

- 2018년 기준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인 비교법인의 비중은 30.0%로, 특례법인의 1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 0~2억원 이하 비교법인의 비중 역시 46.6%로 특례법인의 39.7%를 상회
-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18년 특례법인 법인 수 비중이 39.7%, 비교법인 법인 수 비중은 16.3%로, 특례법인이 비교법인보다 약 2배 높은 수준
-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법인의 법인 수 비중이 특례법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비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20억원 이하인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이고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법인의 규모가 비교법인보다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비교법인의 35~7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법인으로 구성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경우 비교법인의 126% 수준

<표 V-2>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례법인 ¹⁾	계	2,247 (100.0)	2,519 (100.0)	2,526 (100.0)	2,540 (100.0)	2,512 (100.0)	2,418 (100.0)
	0원 미만	420 (18.7)	420 (16.7)	477 (18.9)	463 (18.2)	386 (15.4)	329 (13.6)
	0~2억원 이하	976 (43.4)	1,071 (42.5)	1,073 (42.5)	1,113 (43.8)	1,045 (41.6)	960 (39.7)
	2억~20억원 이하	776 (34.5)	907 (36.0)	856 (33.9)	841 (33.1)	953 (37.9)	961 (39.7)
	20억원 초과	75 (3.3)	121 (4.8)	120 (4.8)	123 (4.8)	128 (5.1)	168 (6.9)
비교법인	계	2,247 (100.0)	2,519 (100.0)	2,526 (100.0)	2,540 (100.0)	2,512 (100.0)	2,418 (100.0)
	0원 미만	828 (36.8)	932 (37.0)	859 (34.0)	812 (32.0)	713 (28.4)	725 (30.0)
	0~2억원 이하	1,021 (45.4)	1,146 (45.5)	1,169 (46.3)	1,185 (46.7)	1,220 (48.6)	1,126 (46.6)
	2억~20억원 이하	306 (13.6)	308 (12.2)	349 (13.8)	365 (14.4)	406 (16.2)	393 (16.3)
	20억원 초과	92 (4.1)	133 (5.3)	149 (5.9)	178 (7.0)	173 (6.9)	174 (7.2)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3년에 대비 2018년 평균 수입금액은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구간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낮아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조세특례에 의한 성장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 과세표준 2억~20억원인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3년 비교법인의 66% 수준에서 2018년 71%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추세는 2016년 83%를 정점으로 하락
 - 특례법인의 규모가 비교법인보다 상대적으로 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로, 특례법인의 성장세가 비교법인에 비해 낮음
 - 나머지 과세표준 구간에서도 평균 수입금액의 상대비율이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특례법인의 성장세가 비교법인에 비해 둔화되는 양상

<표 V-3>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

(단위: %)

과세표준/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미만	67	59	48	60	61	35
0~2억원 이하	44	50	44	52	47	42
2억~20억원 이하	66	72	77	83	73	71
20억원 초과	143	125	141	136	139	126
계	101	100	100	100	100	100

주: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법인세 특례법인 중 결손법인의 수는 비교법인의 절반 이하 수준일 뿐 아니라, 비교법인에 비해 빠른 하락 추세
 - 2018년 기준 결손 특례법인의 수는 326개로, 결손 비교법인 수의 44.5% 수준
 - 2013년 대비 결손법인의 감소폭은 특례법인 26.1%, 비교법인 13.4%로 특례법인이 비교법인보다 두 배 정도 큼
 - 특례법인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구축

<표 V-4>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결손법인 수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례법인 ¹⁾	441 (19.6)	424 (16.8)	489 (19.4)	464 (18.3)	393 (15.6)	326 (13.5)
비교법인	845 (37.6)	915 (36.3)	801 (31.7)	789 (31.1)	705 (28.1)	732 (30.3)

주: 1. () 안은 비중을 의미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비교법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특례법인의 순이익 창출 능력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비교법인의 45%로 낮은 수준
 - 특례법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 당기순이익의 상대비율 수준은 더 낮아짐
 - 2018년 기준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20억~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상대비율은 각각 72%, 56%, 45%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6년을 저점으로 최근 회복 추세
 - 예외적으로 수입금액 20억~10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은 2013년 42% 수준에서 2018년 56% 수준으로 증가 추세

<표 V-5> 수입금액 규모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
(단위: %)

수입금액/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20억원 이하	97	92	50	55	88	72
20억~100억원 이하	42	41	41	49	46	56
100억원 초과	42	36	34	29	35	44
계	44	38	35	31	37	45

주: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2. 흑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표준 구간별로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특례법인을 제외한 모든 법인들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이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표 V-5>)보다 낮은 수준
 - 2018년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은 10% 미만으로,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과의 격차는 33%p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이 56%로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 12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이는 특례법인의 규모가 비교법인보다 크지만 수익성은 비교법인보다 떨어짐을 의미
 -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비교법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상대비율은 평균 수입금액 상대비율보다 36%p 높게 나타남
 - 이는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 특례법인의 경우 비교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가능성 시사
 -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하락 후 회복하는 모습

<표 V-6>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상대비율

(단위: %)

과세표준/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미만	5	5	11	3	15	2
0~2억원 이하	9	6	6	6	9	9
2억~20억원 이하	92	79	75	81	81	107
20억원 초과	62	70	62	47	53	56
계	44	38	35	31	37	45

주: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2.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기준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비교법인의 150% 수준으로, 비교법인보다 수익성이 높은 수준

○ 특례법인과 비교법인 간 평균 당기순이익률의 상대비율은 특례법인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아짐

-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20억~100억원 이하인 소·중규모 특례법인의 경우 상대비율이 각각 253%와 118%로 비교법인보다 높은 수익성 수준

- 반면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특례법인의 상대비율은 75%로, 비교법인 대비 수익성이 낮음

○ 평균 당기순이익률의 상대비율은 2013년 208%에서 2016년 85%로 빠르게 감소하였다가 2018년 150%로 회복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임

- 이는 소규모 특례법인의 상대비율이 크게 변동한 것에 기인

<표 V-7> 수입금액 규모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

(단위: %)

수입금액/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20억원 이하	628	339	153	128	222	253
20억~100억원 이하	96	95	58	80	93	118
100억원 초과	48	107	46	48	56	75
계	208	179	86	85	120	150

주: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2.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3.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중·대규모 특례법인의 상대비율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18년 상대비율은 2013년의 수준을 상회
 - 이는 중·대규모 특례법인의 수익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됨을 의미
 - 소규모 특례법인은 2016년을 저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과세표준 구간별로 평균 당기순이익률의 상대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이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특례법인과 20억원 초과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비교법인의 80~82%, 60% 수준
 - 즉 동일 과세표준 구간에서 특례법인의 수익성이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
 - 과세표준 2억~20억원 이하인 특례법인은 비교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시현
 -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0억원 이하에서 2013년 대비 2018년 상대비율은 감소하거나 유지
 - 반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인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은 증가 추세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중

<표 V-8> 과세표준 구간별 비교법인 대비 특례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 상대비율

(단위: %)

과세표준/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원 미만	95	90	109	127	93	80
0~2억원 이하	82	64	58	65	80	82
2억~20억원 이하	139	108	95	104	98	99
20억원 초과	49	62	48	50	53	60
계	208	179	86	85	120	150

주: 1. 비교법인이 매칭이 된 특례법인만 포함하여 계산

2. 흑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3.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는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분석방법 및 결과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교법인 간 성과지표를 통계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비교·분석

- 비교법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유사한 업종과 유사한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법인으로 구성
 - 자료의 한계로 비교법인이 추출된 특례법인만을 분석에 포함
- 성과지표로 결손확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등 활용

□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효과는 평균사업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를 추정함으로써 분석 가능

-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ATT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의 성과지표 평균에서 조합법인이 특례 적용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성과지표 평균을 차감한 값으로, 다음 식과 같이 표현

$$E[Y_{1i}|T_i = 1] - E[Y_{0i}|T_i = 1]$$

- 여기서 Y_{1i} 는 조합법인이 특례 적용을 받았을 때 성과지표, Y_{0i} 는 조합법인이 특례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 성과지표, T_i 는 특례적용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의미
- 즉 $E[Y_{1i}|T_i = 1]$ 는 특례 적용을 받은 조합법인의 평균 성과지표, $E[Y_{0i}|T_i = 1]$ 는 동일한 조합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평균 성과지표를 의미
- 하지만 동일한 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특례를 적용받았을 때의 성과지표와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때의 성과지표를 동시에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
- 조합법인 중 특례를 적용한 조합법인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조합법인의 성과지표 자료가 있다면 두 집단 간 성과지표의 평균 차이는 추정 가능
 - 하지만 이 경우 특례 적용 여부가 임의선정(random assignment)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비적용 조합법인 간 특성에도 차이가 존재할 것이므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발생 가능

□ 본 분석에서는 특례를 적용받은 조합법인과 이 법인들과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 규모를 가진 비교법인 간 성과지표 평균의 차이를 추정함으로써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를 평가

- 특례 적용을 받지 않은 조합법인의 수가 적다는 자료상 한계로, 일반법인들도 비교법인으로 포함하여 대조군을 구성
 - 이 경우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의 특성 차이로 인한 선택편의 발생 가능

- 가능한 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동질적인 대조군을 설정하기 위해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 규모로 비교법인을 구성
 - 일반적으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를 이용하여 동질적인 대조군을 설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를 추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 성향점수를 이용한 추정은 어려움

□ 비교분석을 위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

$$Y_i = \alpha + \beta T_i + X_i \Lambda + \varepsilon_i$$

- 여기서 Y_i 는 법인 i 의 성과지표, T_i 는 특례적용 조합법인이면 1, 특례 비적용 비교법인이면 0 값을 갖는 더미변수, X_i 는 통제변수 벡터, ε_i 는 오차항을 의미
 - X_i 는 개별 법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로그자산, 로그자본, 업종별 고정효과, 광역시·도 고정효과를 통제변수로 사용
 - 분석에 이용한 성과지표는 결손법인 비율,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당기순이익/수입금액) 등
- 이 회귀식을 이용하면 법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합법인 조세특례 적용 법인과 비적용 법인 간 성과지표의 평균 차이를 추정 가능
 - 회귀식의 β_i 가 지표
 - 만약 β_i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가지면 조합법인 조세특례를 적용한 조합법인의 성과지표가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비교법인보다 높은 수준임을 의미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로 특례 적용 조합법인과 비적용 비교법인 간 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는 <표 V-9>에 제시⁸⁾

- 비교분석 결과, 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비교법인의 평균 수입금액보다 낮은 수준
 - 이는 자산과 자본을 통제할 시(즉 동일한 자산과 자본 투입 시) 비교법인 대비 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창출 능력이 떨어짐을 의미

8) 과세연도 2013년의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법인들의 자산, 자본 등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했는데, 자산, 자본을 통제하지 않거나 금융 및 보험업 법인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2013년을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 평균 수입금액의 격차는 2014년 65억원 수준에서 2015년 52억원 수준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 82억원 수준에 이룸
 - 특례법인의 수입금액이 비교법인에 비해 느린 속도로 성장함을 의미

□ 평균 당기순이익의 경우 특례법인이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

- 즉 동일한 자산과 자본 투입 시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순이익 창출 능력 또한 떨어짐을 시사
 - 두 집단과 평균 당기순이익의 격차는 2014년 9.6억원에서 2016년 21.8억원으로 확대되었다가 2018년 17.1억원으로 축소
 - 평균 당기순이익 격차는 2015년부터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2014년 12월에 있었던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이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존재⁹⁾
- 평균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특례 적용 조합법인이 비교법인보다 1~3%p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특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특례법인의 수입금액 역시 낮아져 당기순이익률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즉 투입한 자산과 자본이 동일할 경우 특례법인과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률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은 비교법인 대비 조합법인의 낮은 수입금액 창출 능력에 따른 결과
- 동 분석결과는 조합법인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활성화, 복지지원 등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
 - 즉 수입금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비교법인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비용 지출 수준에서도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을 위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나 비교법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출 수준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님. 그러나 지출 구성의 차이에 의한 지원까지 부정하는 결과는 아님

□ 결손확률도 특례법인이 비교법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9) 세율인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제2절에서 다룸

□ 경영성과 측면에서 비교분석 결과는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특례 조합법인의 성장성 및 수익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

<표 V-9>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단위: 백만원, %)

과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6,519.7	-5,249.1	-6,637.4	-7,343.0	-8,228.6
표준오차 ¹⁾	1,090.3	1,572.5	974.0	1,249.2	1,382.8
t값	-5.979	-3.338	-6.814	-5.878	-5.951
유의확률	0.000	0.002	0.000	0.000	0.000
결손확률의 차이					
평균값 차이	-9.0	-4.6	-4.9	-3.9	-7.1
표준오차	5.4	4.6	5.3	5.6	4.8
t값	-1.663	-1.003	-0.922	-0.692	-1.463
유의확률	0.107	0.324	0.364	0.494	0.153
당기순이익 ²⁾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960.5	-1,710.0	-2,184.3	-2,114.9	-1,713.7
표준오차	403.8	805.8	1,014.2	1,001.8	813.0
t값	-2.379	-2.122	-2.154	-2.111	-2.108
유의확률	0.024	0.044	0.040	0.044	0.044
당기순이익률 ^{2),3)}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1.1	-3.1	-3.6	-2.4	-1.4
표준오차	1.2	2.7	2.3	2.3	2.2
t값	-0.908	-1.143	-1.582	-1.042	-0.624
유의확률	0.372	0.264	0.124	0.307	0.537

주: 1. 과세연도 2013년은 금융업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2.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로그 자산, 로그 자본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1) 표준오차는 기업 단위의 군집표준오차임

2)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3)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세율인상 효과 분석

-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세율이 기존 9%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12%로 인상하는 2단계 누진 세율 체계로 전환
 - 이러한 정책 변화를 이용하면 세율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하여 분석 가능

-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세율인상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사업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추정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대조군 선정이 중요
 - 하지만 세율인상이 적용된 동일한 조합법인에 대해 세율인상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성과지표의 변화는 관측 불가능
 - 따라서 제1절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인세 과세를 적용받아 세율이 변하지 않은 비교법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추정
 - 이때 세율변화가 없었을 경우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성과지표 추측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비교법인과 동일하다는 가정

- 세율인상 효과 분석을 위한 이중차분 모형은 다음 식과 같이 구성

$$Y_{it} = \alpha + \beta T_{it} P_t + \gamma T_{it} + X_{it} \Lambda + \varepsilon_i$$

- 식에서 Y_{it} 는 과세연도 t 년 법인 i 의 성과지표, T_{it} 는 특례적용 조합법인이면 1, 특례 비적용 비교법인이면 0 값을 갖는 더미변수, P_t 는 과세연도가 세율인상 이후인 2015~2018년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값을 갖는 더미변수, X_{it} 는 통제변수 벡터, ε_i 는 오차항을 의미
 - 통제변수로는 로그자산, 로그자본, 과세연도 고정효과, 업종별 고정효과, 과세연도별 업종(과세연도와 업종의 교차항) 고정효과, 광역시·도 고정효과 등을 분석에 이용하여 이질성을 통제
 - 분석에 활용한 성과지표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 등
- 세율인상 효과는 회귀식의 β 를 통해 추정 가능

- β 는 세율인상 후 세율인상 적용 조합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지표 격차에서 세율인상 전 두 집단 간 성과지표 격차를 차감한 값
- 즉 만약 세율인상이 없었다면 두 집단은 동일한 추세를 가진다는 가정에 따라 성과지표 격차는 세율인상 전후 동일하여 β 는 0 값을 가지게 됨
- 만약 β 가 음(-)의 값으로 추정된다면 세율인상으로 조합법인의 추세가 비교법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여 성과지표의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를 세율인상의 효과로 해석 가능

□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세율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V-10>에 정리

- 먼저 수입금액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합법인 법인세율 3%p 인상으로 인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감소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표본으로 자산과 자본이 통제하지 않은 이중차분 모형을 추정했을 때, 세율인상에 의해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155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표본으로 자산과 자본을 통제하고 추정 시,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595억원 감소
-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 역시 세율인상으로 유의하게 감소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고 자산과 자본을 통제할 경우,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19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자산과 자본을 통제하여 세율인상 효과를 추정했을 때,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9억원 감소
- 세율인상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에 대한 효과는 수입금액의 경우와 유사하게 금융 및 보험업 포함 여부 및 자산과 자본 통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여 자산과 자본의 로그값들을 통제할 경우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률은 세율인상에 의해 1.75%p 감소
 -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자산과 자본을 통제할 경우 세율인상 효과는 크기가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세율인상 효과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저하를 통한 순이익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임
 -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자산과 자본의 규모가 유사한 경

우 당기순이익에 비해 수입금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수익성 지표인 당기순이익률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즉 세율인상이 조합법인의 수익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수입금액 창출(즉 수익률의 분모 항)에는 부정적이었음을 시사

- 이중차분모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율인상 대상이 아닌 과세표준 0~20억원 이하 조합법인과 비교법인의 표본을 이용하여 플라시보 검증(Placebo test)을 수행
 - 과세표준 0~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세율인상 대상이 아니므로 세율인상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예상
 - 부록의 <부표 3>에 결과가 제시된 바, 추정된 효과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된 결과도 존재
 - 이는 과세표준 20억원에서 과세구간을 분할한 것이 일부 조합법인들에게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때문
 - 따라서 과세구간 분할 효과를 감안한다면 <표 V-10>에 제시된 추정 결과는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세율인상의 당기순이익 및 수입금액 감소 효과는 추정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표 V-10> 세율인상 효과 분석

(단위: 백만원, %)

성과지표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¹⁾	
세율인상 효과		-15,508	-59,547	-1,879	-908	-1.75	0.03
기업단위의 군집표준오차		14,151	22,559	791	346	0.78	1.54
t값		-1.096	-2.640	-2.375	-2.623	-2.242	0.020
유의확률		0.289	0.019	0.030	0.019	0.042	0.985
통제 변수	과세연도	○	○	○	○	○	○
	업종중분류	○	○	○	○	○	○
	과세연도 × 업종중분류	○	○	○	○	○	○
	지역(광역시·도)	○	○	○	○	○	○
	로그 자산		○		○		○
	로그 자본		○		○		○
관측치 수		1,634	616	1,614	610	1,577	604

주: 1.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분석

2.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자산과 자본을 통제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

1)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조합법인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 본 절은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조합법인의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통적인 산업연관분석(또는 투입산출분석)을 통해 검토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 상호의존 관계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으로, 산업 부문별로 최종 수요의 증가가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¹⁰⁾을 지님
 - 즉 조합법인 분야 최종 수요 증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가능
 -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조합법인 활동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
 -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순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두 항목의 차이($\Pi_1 - \Pi_2$)로 정의하고 분석¹¹⁾
 - 조합법인의 활동(소비, 투자 등)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Π_1)
 - 조합법인 조세특례 규모의 정부지출(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등)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Π_2)¹²⁾

가.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론: 투입산출분석¹³⁾

- 산업연관분석은 산업연관분석의 파라미터인 투입계수가 고정적이라 가정하고, 이 밖에 네 가지 고전적 가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짐
 - 네 가지 고전적 가정은 다음과 같음
 - 결합생산이 존재하지 않음(즉 각 상품과 각 산업 부문은 1대1 대응관계임)
 - 대체생산방법이 존재하지 않음(즉 각 상품에 대해 하나의 생산방법만 존재)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음(즉 각 부문이 사용한 투입량은 그 부문의 생산 수준에 비례)
 -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음(즉 각 부문 생산활동 결과의 총계는 각 부문이 동시에 행한 결과와 같음)

10) 한국은행(2014) pp. 3-4

11) 전병목·류덕현(2017) p. 115

12)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없었을 경우 축소되는 세액감면 규모만큼 재정수입이 증가한다는 가정

13) 한국은행(2014) pp. 49~74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각 상품의 생산과 사용내역을 ‘상품×상품’ 행렬로 나타낸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수행
- 산업연관분석의 기본원리는 산업 간 연관관계 또는 상호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투입계수를 매개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의 크기인 생산 유발효과를 계측 및 분석하는 것

1) 투입계수의 산출

- 투입계수는 각 산업 부문이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다른 부문에서 구입한 각종 원재료, 연료 등의 중간투입액을 해당 부문의 재화나 서비스의 총 투입액(=총 산출액)으로 나눈 것
- 즉 투입계수는 각 부문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중간재 및 부가가치의 단위를 나타내므로, 각 산업 부문의 생산기술구조 또는 생산함수로 이해 가능
- 예를 들어, <표 V-11>에서 투입계수는 $a_{ij} = \frac{x_{ij}}{x_j}$ 로, i 부문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j 부문 생산물의 크기임

<표 V-11> 투입산출표의 형식(기초가격 기준)

구분	중간수요						최종수요	총수요	총산출액 ¹⁾	수입	잔폐물 발생(+)	총공급	
	1	2	...	j	...	n							
중간 투입	1	x_{11}	x_{12}	...	x_{1j}	...	x_{1n}	y_1		x_1	m_1	z_1	
	2	x_{21}	x_{22}	...	x_{2j}	...	x_{2n}	y_2		x_2	m_2	z_2	
	⋮	⋮	⋮	⋮	⋮	⋮	⋮	⋮		⋮	⋮	⋮	
	i	x_{i1}	x_{i2}	...	x_{ij}	...	x_{in}	y_i		x_i	m_i	z_i	
	⋮	⋮	⋮	⋮	⋮	⋮	⋮	⋮		⋮	⋮	⋮	
	n	x_{n1}	x_{n2}	...	x_{nj}	...	x_{nn}	y_n		x_n	m_n	z_n	
소계													
순생산물세													
잔폐물발생(-)													
중간투입계													
부가가치													
총투입액													

주: 1) 자가공정 산출액 포함

자료: 한국은행(2014) p. 51.

2) 생산유발계수의 도출

- 생산유발계수는 어떤 품목 부문의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각 품목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의 크기를 표시
- 생산유발계수는 수학적 방법으로 역행렬을 이용하여 도출
 - 이는 품목 부문 수가 많은 경우, 투입계수를 매개로 무한히 계속되는 생산과 급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 <표 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품목 부문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살펴보면 총 산출액이 중간 수요와 최종 수요의 합계에서 수입과 잔폐물 발생액을 차감한 값과 일치
 - 이를 수급방정식으로 표현하면

$$\begin{aligned}
 a_{11}x_1 + a_{12}x_2 + \cdots + a_{1j}x_j + \cdots + a_{1n}x_n + y_1 - m_1 - z_1 &= x_1 \\
 &\vdots \\
 a_{i1}x_1 + a_{i2}x_2 + \cdots + a_{ij}x_j + \cdots + a_{in}x_n + y_i - m_i - z_i &= x_i \\
 &\vdots \\
 a_{n1}x_1 + a_{n2}x_2 + \cdots + a_{nj}x_j + \cdots + a_{nn}x_n + y_n - m_n - z_n &= x_n
 \end{aligned}$$

- 여기서 a_{ij} 는 j 부문의 생산을 위한 i 부문 생산물 투입계수, x_i 는 i 부문의 산출액(자가공정 산출액 포함), y_i 는 i 부문의 최종 수요, m_i 는 i 부문의 수입, z_i 는 i 부문의 잔폐물 발생액

- 행렬로 나타내면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j} & \cdots & a_{1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a_{i1} & a_{i2} & \cdots & a_{ij} & \cdots & a_{in} \\ \vdots & \vdots & & \vdots &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j}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x_1 \\ \vdots \\ x_i \\ \vdots \\ x_n \end{bmatrix} + \begin{bmatrix} y_1 \\ \vdots \\ y_i \\ \vdots \\ y_n \end{bmatrix} - \begin{bmatrix} m_1 \\ \vdots \\ m_i \\ \vdots \\ m_n \end{bmatrix} - \begin{bmatrix} z_1 \\ \vdots \\ z_i \\ \vdots \\ z_n \end{bmatrix} = \begin{bmatrix} x_1 \\ \vdots \\ x_i \\ \vdots \\ x_n \end{bmatrix}$$

$$\Downarrow$$

$$Ax + y - m - z = x$$

- 여기서 A 는 투입계수 행렬, x 는 총 산출액 벡터, y 는 최종 수요 벡터, m 은 수입액 벡터, z 는 잔폐물 발생액 벡터

- 이 행렬식을 x 에 대해 풀면 다음 식과 같이 정리

$$x = (I - A)^{-1}(y - m - z)$$

- 여기서 $(I - A)^{-1}$ 행렬을 생산유발계수(단, I 는 단위행렬)
- 생산유발계수 A 의 (i, j) 항(즉, i 행 j 열)은 j 부문 생산물의 최종 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i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과급효과를 표시
- 생산유발계수 A 의 i 행 합계는 각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 수요가 각각 한 단위씩 발생할 경우 i 부문에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생산과급효과
- 생산유발계수 A 의 j 열 합계는 j 부문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라 전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과급효과를 표시

3) 부가가치유발계수의 도출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어떤 품목 부문에서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각 품목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크기
-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면 최종 수요와 부가가치 간 기능적인 관계 파악 가능
 - 산업연관표에서는 부가가치의 변동이 최종 수요의 변동에서 유발된다고 간주
 - 이는 공급능력, 노동력 등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국내생산의 변동이 최종 수요의 변동으로 일어나고 생산활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
- 최종 수요와 부가가치 간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
 - 부가가치율은 피용자 보수, 영업 잉여 등 부가가치액을 총 투입으로 나눈 것으로, $a_j^v = \frac{v_j}{x_j}$ 로 표현
 - 부가가치율 정의에 의해 부가가치와 총 산출액의 관계는 $v = \hat{A}^v x$ 로 표현할 수 있음
 - 여기서 v 는 부가가치 벡터, \hat{A}^v 는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임
 - 부가가치와 총 산출액 관계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 - A)^{-1}(y - m - z)$ 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게 됨

$$v = \hat{A}^v (I - A)^{-1} (y - m - z)$$

- 여기서 $\hat{A}^v(I-A)^{-1}$ 을 부가가치유발계수
- 부가가치유발계수 $\hat{A}^v(I-A)^{-1}$ 의 (i,j) 항, i 행 합계, j 열 합계에 대한 해석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와 유사

4) 노동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의 도출

□ 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의 크기를 표시

- 노동유발계수는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와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포함) 수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로 구분

□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도출

- 노동계수는 어떤 품목 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

- 수식으로 i 부문의 노동계수를 표현하면 $l_i^* = \frac{l_i}{x_i}$ 로 표현(단, l_i 는 피용자 수 또는 취업자 수)

- 노동계수 정의에 의해 노동량과 총 산출액의 관계식은 $l = \hat{L}^*x$

- 여기서 \hat{L}^* 는 노동계수의 대각행렬

- 노동량과 총 산출액의 관계식에 생산유발관계식 $x = (I-A)^{-1}(y-m-z)$ 을 대입하면 다음 식이 성립

$$l = \hat{L}^*(I-A)^{-1}(y-m-z)$$

- 여기서 $\hat{L}^*(I-A)^{-1}$ 을 노동유발계수

- 노동유발계수 $\hat{L}^*(I-A)^{-1}$ 의 (i,j) 항, i 행 합계, j 열 합계에 대한 해석은 생산유발계수의 경우와 유사

나. 분석결과

- 한국은행의 201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투입산출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산거래표를 기준으로 투입계수 및 생산유발계수 등을 추정
 - 이는 개별 조합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특성상 국내발생 소비재들에 대한 것으로 국내수요가 미치는 영향만 관찰되기 때문
 - 조합법인의 수를 조합법인의 활동 규모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여, 조합법인의 산업연관표 대분류¹⁴⁾에 따른 분포와 비중을 고려한 조합법인 분야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를 추정
 - 산업연관표 대분류에 따른 조합법인의 분포와 비중은 <표 V-12>로 정리
 - 조합법인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3~2017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금융 및 보험 서비스로 조합법인 중 63.1%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19.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5.3%), 농림수산물(4.9%), 음식료품(2.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9%)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들을 추정할 때 분야별 조합법인의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추정

14) 산업연관표의 대분류는 농림수산물, 광산물, 음식료품, 섬유 및 가죽제품, 목재 및 종이, 인쇄,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제품, 전기장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제품, 제조업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전력, 가스 및 증기,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건설,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기타 등 33개 분야로 구성됨

<표 V-12>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

(단위: 개)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농림수산물	231	225	220	204	218	220
광산물	0	0	0	0	0	0
음식료품	103	107	105	102	103	104
섬유 및 가죽제품	2	2	3	1	1	2
목재 및 종이, 인쇄	1	2	5	5	2	3
석탄 및 석유제품	0	0	0	0	0	0
화학제품	1	2	2	3	3	2
비금속광물제품	1	1	0	0	0	0
1차 금속제품	0	0	0	0	0	0
금속가공제품	1	2	3	2	2	2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	2	0	0	0	0
전기장비	2	1	1	0	2	1
기계 및 장비	1	3	2	2	1	2
운송장비	0	0	0	0	0	0
기타 제조업 제품	0	0	2	1	2	1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	0	0	0	0	0
전력, 가스 및 증기	1	3	3	2	1	2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8	9	9	11	8	9
건설	8	10	12	6	3	8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827	833	859	882	905	861
운송서비스	7	8	9	8	9	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9	13	11	10	12	1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2	5	6	6	4	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915	2,889	2,835	2,760	2,760	2,832
부동산서비스	41	45	32	38	34	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246	244	238	235	235	240
사업지원서비스	24	25	21	19	28	2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	0	0	0	0	0
교육서비스	5	4	2	8	6	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96	104	104	75	56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6	5	5	5	6	5
기타 서비스	20	15	13	11	14	15
기타	0	0	0	0	1	0
계	4,558	4,559	4,502	4,396	4,416	4,486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3>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별 과세특례 조합법인 비중

(단위: %)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농림수산물	5.07	4.94	4.89	4.64	4.94	4.89
광산물	0.00	0.00	0.00	0.00	0.00	0.00
음식료품	2.26	2.35	2.33	2.32	2.33	2.32
섬유 및 가죽제품	0.04	0.04	0.07	0.02	0.02	0.04
목재 및 종이, 인쇄	0.02	0.04	0.11	0.11	0.05	0.07
석탄 및 석유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화학제품	0.02	0.04	0.04	0.07	0.07	0.05
비금속광물제품	0.02	0.02	0.00	0.00	0.00	0.01
1차 금속제품	0.00	0.00	0.00	0.00	0.00	0.00
금속가공제품	0.02	0.04	0.07	0.05	0.05	0.0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0	0.04	0.00	0.00	0.00	0.01
전기장비	0.04	0.02	0.02	0.00	0.05	0.03
기계 및 장비	0.02	0.07	0.04	0.05	0.02	0.04
운송장비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제조업 제품	0.00	0.00	0.04	0.02	0.05	0.02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0	0.00	0.00	0.00	0.00	0.00
전력, 가스 및 증기	0.02	0.07	0.07	0.05	0.02	0.04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18	0.20	0.20	0.25	0.18	0.20
건설	0.18	0.22	0.27	0.14	0.07	0.17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18.14	18.27	19.08	20.06	20.49	19.21
운송서비스	0.15	0.18	0.20	0.18	0.20	0.1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20	0.29	0.24	0.23	0.27	0.25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4	0.11	0.13	0.14	0.09	0.10
금융 및 보험 서비스	63.95	63.37	62.97	62.78	62.50	63.12
부동산서비스	0.90	0.99	0.71	0.86	0.77	0.8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5.40	5.35	5.29	5.35	5.32	5.34
사업지원서비스	0.53	0.55	0.47	0.43	0.63	0.5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	0.00	0.00	0.00	0.00	0.00
교육서비스	0.11	0.09	0.04	0.18	0.14	0.11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2.11	2.28	2.31	1.71	1.27	1.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13	0.11	0.11	0.11	0.14	0.12
기타 서비스	0.44	0.33	0.29	0.25	0.32	0.32
기타	0.00	0.00	0.00	0.00	0.02	0.0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세특례 조합법인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 추정 결과

- 조합법인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1.667로 나타남
 - 이는 조합법인 분야에 대한 최종 수요가 한 단위(1원) 발생할 때 또는 조합법인 조세특례에 대한 지출이 1원 증가할 때(즉 조합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1원 증가할 때) 국내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액 합계는 1.667원임을 의미
 - 추정된 조합법인 분야의 생산유발계수는 2015년 최종수요 생산유발계수 1.813과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1.939보다 작으나, 소비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1.687과 비슷한 수준¹⁵⁾
- 조합법인 분야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62로 추정
 - 이는 조합법인 분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862단위임을 의미
 - 조합법인 분야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5년 최종수요 부가가치유발계수 0.774와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0.813보다 크고 소비에 의한 생산유발계수 0.852와 비슷한 수준¹⁶⁾
- 조합법인 분야의 취업유발계수는 12.184
 - 조합법인 분야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때 국내 전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이 12.184명임을 의미
 - 이는 최종수요 취업유발계수 11.3명과 투자에 의한 취업유발계수 11.3명보다 크고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 13.8명보다 작은 수치¹⁷⁾

15) 2015년 최종수요, 소비, 투자에 의한 생산유발계수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참고

16) 2015년 최종수요, 소비,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참고

17) 2015년 최종수요, 소비, 투자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참고

〈표 V-14〉 과세특례 조합법인 분야의 유발계수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	조합법인 분야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70	0.038	1.489
광산품	0.000	0.000	0.001
음식료품	0.055	0.009	0.153
섬유 및 가죽제품	0.008	0.001	0.032
목재 및 종이, 인쇄	0.022	0.006	0.098
석탄 및 석유제품	0.011	0.002	0.001
화학제품	0.030	0.009	0.048
비금속광물제품	0.002	0.001	0.006
1차 금속제품	0.004	0.001	0.006
금속가공제품	0.008	0.003	0.021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13	0.004	0.020
전기장비	0.008	0.002	0.023
기계 및 장비	0.004	0.001	0.013
운송장비	0.005	0.001	0.011
기타 제조업 제품	0.004	0.001	0.03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08	0.004	0.038
전력, 가스 및 증기	0.024	0.009	0.020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06	0.003	0.031
건설	0.006	0.002	0.040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232	0.123	3.149
운송서비스	0.035	0.014	0.372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7	0.012	0.50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70	0.037	0.34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749	0.428	3.313
부동산서비스	0.057	0.042	0.1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100	0.050	0.780
사업지원서비스	0.052	0.036	0.8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01	0.001	0.009
교육서비스	0.003	0.002	0.04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024	0.013	0.33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05	0.003	0.047
기타 서비스	0.011	0.005	0.213
기타	0.002	0.000	0.000
유발계수	1.667	0.862	12.184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와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없었을 경우 동 조세특례에 의한 조세지출 전액을 정부지출(소비지출, 투자지출 등)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지출(소비지출, 투자지출 등)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를 조합법인 조세특례지출 규모 전액을 정부지출로 사용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해석 가능
 - 조합법인 조세특례가 없었다면 조세특례로 인한 세액감면 규모만큼 법인세(즉, 재정수입)는 증가할 것이고 법인세 증가분을 정부재정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가정
 - 정부소비지출 및 정부투자지출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
 - 조합법인 조세지출 전액을 정부소비지출로 사용할 경우 정부소비지출 한 단위당 국내 전 분야에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은 각각 1.474, 0.882, 14.227단위
 - 조합법인 조세지출 전액을 정부투자지출로 사용할 경우 정부투자지출 한 단위당 국내 전 분야에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은 각각 2.042, 0.775, 11.842단위
 - 정부지출을 소비와 투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정부지출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1.599, 0.859, 13.702단위로 추정¹⁸⁾

18) 이 경우 각종 유발계수들은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상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의 비중(78%와 22%)으로 가중평균하여 구함

<표 V-15>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1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	정부소비지출			정부투자지출		
	생산	부가가치	취업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3	0.007	0.268	0.008	0.004	0.153
광산품	0.000	0.000	0.001	0.007	0.004	0.020
음식료품	0.022	0.004	0.065	0.012	0.002	0.033
섬유 및 가죽제품	0.008	0.001	0.037	0.008	0.001	0.034
목재 및 종이, 인쇄	0.011	0.003	0.053	0.030	0.009	0.132
석탄 및 석유제품	0.015	0.002	0.003	0.020	0.003	0.003
화학제품	0.055	0.016	0.092	0.085	0.024	0.129
비금속광물제품	0.002	0.001	0.006	0.079	0.024	0.206
1차 금속제품	0.004	0.001	0.007	0.089	0.018	0.120
금속가공제품	0.007	0.002	0.020	0.118	0.042	0.320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11	0.004	0.019	0.059	0.019	0.091
전기장비	0.006	0.002	0.019	0.052	0.016	0.148
기계 및 장비	0.004	0.001	0.015	0.037	0.011	0.121
운송장비	0.007	0.001	0.014	0.123	0.021	0.236
기타 제조업 제품	0.007	0.002	0.056	0.011	0.003	0.086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10	0.005	0.054	0.026	0.013	0.123
전력, 가스 및 증기	0.030	0.010	0.026	0.038	0.014	0.031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12	0.006	0.060	0.007	0.004	0.033
건설	0.004	0.002	0.030	0.686	0.260	4.964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45	0.024	0.652	0.076	0.040	0.998
운송서비스	0.022	0.009	0.235	0.049	0.020	0.473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3	0.010	0.481	0.023	0.007	0.298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28	0.015	0.148	0.041	0.021	0.19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5	0.020	0.158	0.038	0.022	0.165
부동산서비스	0.020	0.015	0.057	0.019	0.014	0.0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26	0.013	0.212	0.242	0.122	1.804
사업지원서비스	0.026	0.018	0.431	0.043	0.030	0.6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480	0.372	3.830	0.001	0.001	0.008
교육서비스	0.242	0.167	3.281	0.001	0.001	0.015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271	0.143	3.694	0.004	0.002	0.0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11	0.005	0.098	0.003	0.002	0.029
기타 서비스	0.005	0.002	0.103	0.007	0.003	0.122
기타	0.002	0.000	0.000	0.002	0.000	0.000
유발계수	1.474	0.882	14.227	2.042	0.775	11.842

자료: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6> 정부지출의 유발계수 2

산업연관표 대분류 분야	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		
	생산	부가가치	취업
농림수산물	0.012	0.006	0.243
광산품	0.002	0.001	0.005
음식료품	0.020	0.003	0.058
섬유 및 가죽제품	0.008	0.001	0.036
목재 및 종이, 인쇄	0.015	0.005	0.071
석탄 및 석유제품	0.016	0.002	0.003
화학제품	0.062	0.017	0.100
비금속광물제품	0.019	0.006	0.050
1차 금속제품	0.023	0.005	0.032
금속가공제품	0.031	0.011	0.086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022	0.007	0.034
전기장비	0.016	0.005	0.048
기계 및 장비	0.011	0.003	0.038
운송장비	0.032	0.005	0.063
기타 제조업 제품	0.008	0.002	0.063
제조임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014	0.007	0.069
전력, 가스 및 증기	0.031	0.011	0.027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011	0.006	0.054
건설	0.154	0.058	1.115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052	0.027	0.728
운송서비스	0.028	0.011	0.288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0.031	0.010	0.44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031	0.016	0.15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036	0.020	0.160
부동산서비스	0.020	0.015	0.0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073	0.037	0.563
사업지원서비스	0.029	0.020	0.48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375	0.290	2.989
교육서비스	0.189	0.130	2.562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212	0.112	2.89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009	0.004	0.083
기타 서비스	0.006	0.002	0.107
기타	0.002	0.000	0.000
유발계수	1.599	0.859	13.702

자료: 『2015년 산업연관표』(한국은행, 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생산유발효과를 기준으로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는 정부투자지출의 경제적 효과보다 작지만, 정부소비지출과 소비와 투자를 혼합한 소비지출(혼합정부지출)보다 큰 것으로 추정
-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와 경우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가 정부투자지출보다 효과적이지만 정부소비지출과 혼합정부지출보다 효과적이지 못함

<표 V-17> 유발계수 종합

구분	생산		부가가치		취업	
	유발계수	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	순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계수	순 경제적 파급효과
조합법인 분야	1.667		0.862		12.194	
정부소비지출	1.474	0.193	0.882	-0.020	14.227	-2.033
정부투자지출	2.042	-0.375	0.775	0.088	11.842	0.352
정부소비지출+정부투자지출	1.599	0.068	0.859	0.004	13.702	-1.508

주: 유발계수는 <표 V-14, V-15, V-16>의 마지막 행을 재배열한 것이고, 순 경제적 파급효과는 조합법인 분야 유발계수에서 정부지출 유발계수를 차감한 값임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 본 연구는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제72조), 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8개 유형의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타당성, 지원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과세특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협동조합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상 동 지원제도의 목적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도 구분상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로 구분
 - 관련 지원제도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지원제도로 인식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당기순이익과세와 저율과세로 구성
 - 세무조정을 기부금, 접대비 등 9개 항목으로 축소·적용하여 당기순이익에 가깝게 과세하며 세무조정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춤
 - 저율과세제도는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조합법인의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따라 1~13%p 하향 적용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전망) 기준 3,597억원으로 법인세 감면 항목 중 상위 7위에 해당

<표 VI-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

(단위: %, %p)

일반법인		조합법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우대 폭	법인수 분포
~2억원	10	~20억원	9	~2억원	1	35.5
2억~200억원	20	20억원 초과	12	2억~200억원	8	64.5
200억~3,000억원	22			200억~3,000억원	10	0.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13	

주: 조합법인 법인수 분포는 2018 귀속소득 기준

- 조세지원의 타당성 관점에서 평가한 본 제도는 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며, 조합원과의 연계성은 조합법인에 따라 차이
 - 조합법인 지원을 통한 정책목적 달성의 타당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인 공익성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며, 조합원 지원 목적에서는 일부 조합법인만 타당성 인정
 - 조합법인 활성화의 근본적 목적인 특정(산업) 활동 활성화라는 목적은 조합법인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므로 그 타당성이 약함
 - 실질적인 지원대상인 조합원과의 연계는 조합법인 유형별로 차이
 - 1차산업 및 중소기업 기반 조합법인은 산업종사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은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거의 무의미
 - 결국 조합법인 활성화라는 목적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형태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제한함으로써 형평성 문제 존재
 - 조합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조합원 자격요건과의 연계가 중요한데, 이러한 연계가 없는 조합법인도 포함하여 지원 타당성 확보에 한계를 지님

〈표 VI-2〉 조합법인의 목적 및 지원대상 설정의 타당성

유형	(정책목적) 공익성	대상 설정 타당성		기타
		산업지원	대상 설정 특정화	
신협	×	×	×	
새마을금고	×	×	×	
농협	×	○(농업, 축산업)	○	농축산업인 대상
수협	×	○(수산업)	○	수산업인 대상
중기협동조합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 대상
산림조합	×	○(임업)	○	임업인 대상
엽연초협동조합	×	△(농업)	○	연초경작자 대상, 담배는 추가과세중
소비자생협	×	×	×	

주: 조합법인의 기본적 정책목적은 조합법인 활성화이며 공익성의 판단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였음

- 지원수단으로서 조세특례는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나, 조합원 지원 측면에서는 조합활동을 통한 간접적 영향
 - 조세특례는 조합법인의 세후 수익률을 높여 개인 및 자본의 참여 유인 제고
 - 또한 조합법인의 의사결정 구조가 1인 1표제를 따르고 있으므로, 자본 보유량이 낮은 영세 조합원의 참여 유인 높음
 - 특례 대상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1인 1표로 규정
 - 한편 조합원 지원 측면에서는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를 통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직접적 지원제도인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은 제한적
 - 다만 조합법인의 배당성향(26.9~44%)은 일반 상장기업(32.4~41.3%)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이용실적 배당비율도 농협, 수협을 제외하고는 높지 않음
 - 개별 조합법인법상 최우선 배당으로 규정한 경우 상대적으로 높음

〈표 VI-3〉 조합법인별 이용실적 비례배당 활용 현황

(단위: %)

배당 규정	조합법인(2019)		
	조합법인	배당성향	이용실적 배당 비율
이용실적 비례배당 최우선	농업	44	56.5
	수협	39.9	47.6
	산림조합	26.9	19.8
	생협	n.a	n.a
이용실적 비례배당 병행	새마을금고	39.0	12.1
	신협	41.4	5.7
	중소기업협동	n.a	n.a
배당 관련 미규정	엽연초생산	n.a	n.a

주: 2019년 사업연도 전체기업 배당성향은 41.25%(코스피), 32.40%(코스닥)
 자료: 『브릿지경제』, 「순이익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2020. 4. 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512>, 검색일자: 2020. 6. 10.

- 조세특례를 통한 조합법인 지원 수준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조합원 지원 제도는 별도의 조세지원제도로 운용 중
 - 조합법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공익법인, 중소기업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으나, 개인소득세 보완을 통해 조정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외국은 지원대상을 조합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 반면 우리나라는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어 개인단계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약화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재정사업은 3건(2020, 272억원) 존재하나, 중복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표 VI-4> 주요국의 조합법인 세제지원

국가	조합 지원		조합원 지원(손금산입)	
	당기순이익 과세	저율과세	이용실적 비례배당	출자금 배당
우리나라	○	○	×	×
호주	×	×	○	○
캐나다	×	×	○(모든 납세자)	×
프랑스	×	×1	○(소비자조합, 금융조합)	×
독일	×	×2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네덜란드	×	×	○	×
영국	×	×	○	×
미국	×	×	○	○(농업)

주: 1. 일정 조건 농업협동조합은 면세
2. 일정 조건 농림협동조합은 면세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특례법인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향상에 부정적인 역할
-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 규모의 비교법인에 비해 자산, 자본 등 통제 후 수입 및 당기순이익 창출 능력이 낮게 나타나 조세특례의 효과성 의심
 - 다만 결손확률 및 당기순이익률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 당기순이익률의 통계적 차이 없음은 수입금액 대비 비용지출 구조가 비교법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의미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법인의 지원 활동 역시 크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음

<표 VI-5> 특례법인과 비특례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단위: 백만원, %)

과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	-6,519.7*** (1,090.3)	-5,249.1*** (1,572.5)	-6,637.4*** (974.0)	-7,343.0*** (1,249.2)	-8,228.6*** (1,382.8)
결손확률	-9.0 (5.4)	-4.6 (4.6)	-4.9 (5.3)	-3.9 (5.6)	-7.1 (4.8)
당기순이익 ¹⁾	-960** (404)	-1,710** (806)	-2,184** (1,014)	-2,115** (1,002)	-1,714** (813)
당기순이익률 ^{1),2)}	-1.1 (1.2)	-3.1 (2.7)	-3.6 (2.3)	-2.4 (2.3)	-1.4 (2.2)

- 주: 1. 비특례법인은 특례법인과 유사한 업종 및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법인으로 추출
 2. 과세연도 2013년은 금융업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3.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자산의 로그값, 자본의 로그값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4. () 안은 기업단위의 군집표준오차
 5.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
 1)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흑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2)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 2015년부터 적용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9 → 12%)은 특례법인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당기순이익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재무변수를 통제한 모형에서 법인세율 3%p 인상에 의해 과표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수입금액은 595억원 감소, 당기순이익 9억원 감소, 당기순이익률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음

<표 VI-6> 2015년 세율 인상 효과 분석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¹⁾	
세율인상 효과	-15,508 (14,151)	-59,547** (22,559)	-1,879** (791)	-908** (346)	-1.75** (0.78)	0.03 (1.54)
재무변수 통제		○		○		○

- 주: 1.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흑자법인을 기준으로 분석
 2. 특례법인과 유사한 업종 및 수입금액(95~105%) 규모를 가진 비특례법인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 중차분법을 이용하여 추정
 3. 재무변수는 자산의 로그값과 자본의 로그값을 의미
 4. 금융업은 2013년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재무변수를 통제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5.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업종중분류와 지역의 교차항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6. () 안은 기업 단위의 군집표준오차
 7.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1) 당기순이익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 결론적으로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는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나, 다른 유형의 법인(공익법인, 중소기업)에 비해 과도한 지원 수준임에도 효과성은 낮은 상태
 - 성장(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측면의 성과도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 성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
 - 조합원에 대한 지원 기능도 일반 상장기업과 유사한 배당성향과 비용지출 비율을 보여 크게 다르지 않음

- 이에 따라 동 제도는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을 명확히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만약 동 제도를 외국과 같이 조합원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경우, 보다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제도를 조정할 필요
 - 조합법인 지원제도인 당기순이익과세, 저율과세를 폐지하고 조합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과세 면제 필요
 - 조합원에게 조합법인의 소득이 법인세 부담없이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을 지원하고, 조합원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 개인소득자 간 과세 형평성 유지
 - 현행 조합법인 관련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폐지
 - 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시장경쟁 구조에 대한 왜곡은 방지
 - 현재와 같은 조합법인 활동 지원 목적을 유지할 경우에도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방안으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축소 또는 배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소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되,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과세함으로써 시장왜곡 축소 가능
 - 조세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당기순이익과세를 (점진) 폐지하고 저율과세로 지원 내용을 단순화할 필요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분포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에도 허용하지 않는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할 필요성은 낮음

- 당기순이익과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다음의 세무조정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전병목·류덕현, 2017)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정당사유 없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익금산입 등

참고문헌

- 기획재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2019 각 연도.
-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8., pp. 7~40.
- 전병목·류덕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 _____, 『2015년 산업연관표』, 2019.
- 『브릿지경제』, 「순이익줄어도 배당은 그대로…」, 2020. 4. 23.,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423010008512>, 검색일자: 2020. 6. 1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부 록



부록 1: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비교분석

<부표 1>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단위: 백만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2,075.5	174.6	1,867.3	-10.5	105.7	575.5
표준오차 ¹⁾	1,898.9	915.0	2,264.8	353.9	500.1	537.9
t값	1.093	0.191	0.825	-0.030	0.211	1.070
유의확률	0.284	0.850	0.416	0.977	0.834	0.293
결손확률의 차이						
평균값 차이	-17.0	-18.8	-12.7	-12.5	-12.2	-15.6
표준오차	6.2	5.8	5.3	4.5	5.3	4.8
t값	-2.731	-3.262	-2.398	-2.764	-2.298	-3.272
유의확률	0.011	0.003	0.023	0.010	0.029	0.003
당기순이익 ²⁾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343.7	-600.3	-761.7	-899.2	-764.7	-599.0
표준오차	226.4	339.4	398.9	440.8	399.4	414.7
t값	-1.518	-1.768	-1.910	-2.040	-1.915	-1.444
유의확률	0.141	0.088	0.067	0.050	0.065	0.159
당기순이익률 ^{2),3)}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0.4	-1.7	-2.8	-2.9	-0.9	-1.0
표준오차	0.7	0.8	1.6	1.2	0.7	1.3
t값	-0.543	-2.221	-1.738	-2.519	-1.313	-0.809
유의확률	0.592	0.035	0.094	0.018	0.200	0.425

주: 1.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1) 표준오차는 기업 단위의 군집표준오차임

2)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3)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특례법인과 비교법인의 성과지표 비교 분석

(단위: 백만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입금액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5,486.7	-5,650.3	-3,943.2	-5,960.3	-6,193.3	-7,748.0
표준오차 ¹⁾	1,741.4	1,876.8	1,613.6	1,642.4	1,751.3	2,371.9
t값	-3.151	-3.011	-2.444	-3.629	-3.537	-3.267
유의확률	0.004	0.005	0.021	0.001	0.001	0.003
결손확률의 차이						
평균값 차이	-1.1	-0.8	1.1	1.9	3.2	-0.5
표준오차	4.5	2.8	3.1	3.2	2.7	1.4
t값	-0.242	-0.299	0.336	0.578	1.155	-0.324
유의확률	0.810	0.767	0.739	0.568	0.258	0.748
당기순이익 ²⁾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372.5	-315.9	-384.7	-444.1	-488.1	-319.4
표준오차	129.0	81.7	109.2	82.0	130.4	150.9
t값	-2.888	-3.866	-3.523	-5.414	-3.743	-2.117
유의확률	0.008	0.001	0.002	0.000	0.001	0.043
당기순이익률 ^{2),3)} 평균의 차이						
평균값 차이	1.3	0.5	1.0	0.3	1.4	1.6
표준오차	0.9	1.3	2.0	1.1	1.0	2.3
t값	1.425	0.377	0.517	0.232	1.360	0.709
유의확률	0.168	0.710	0.610	0.818	0.185	0.484

주: 1.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

2. 국세청 기준 업종중분류, 지역(광역시·도), 로그 자산, 로그 자본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

1) 표준오차는 기업 단위의 군집표준오차임

2)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이익률은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계산

3)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서울인상 효과 분석(플라시보 검증, Placebo Test)

(단위: 백만원, %)

성과지표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¹⁾	
서울인상 효과		42	-870	-10	-25	-0.60	-0.38
기업 단위의 군집표준오차		359	397	16	11	0.32	0.58
t값		0.118	-2.195	-0.577	-2.273	-1.879	-0.658
유의확률		0.907	0.035	0.567	0.029	0.069	0.515
통제 변수	과세연도	○	○	○	○	○	○
	업종중분류	○	○	○	○	○	○
	과세연도 x 업종중분류	○	○	○	○	○	○
	지역(광역시·도)	○	○	○	○	○	○
	로그 자산	-	○	-	○	-	○
	로그 자본	-	○	-	○	-	○
관측치 수		16,806	9,080	16,508	8,940	15,919	8,810

주: 1. 과세표준 0~20억원 이하 후자법인을 기준으로 분석

2. 금융 및 보험업은 2013년 재무상태표 정보가 없어 자산과 자본을 통제할 경우 분석에서 제외

1) 당기순이익률의 경우 100%를 초과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2: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재정사업 예산

〈부표 4〉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증감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B)	(B-A)	(B-A)/A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12,299	12,575	12,575	16,948	15,196	2,621	20.8

〈부표 5〉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18					2019('19. 12월 말)						2020 예산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 기능별 분류 (합계)	12,299	12,299	12,299 (12,299)	-	-	12,575	12,575	12,575	12,575 (12,575)	-	-	15,196
• 중소기업 중앙회보조	8,398	8,398	8,398 (8,398)	-	-	8,623	8,623	8,623	8,623 (8,623)	-	-	9,514
- 정책개발 및 조사 통계	2,424	2,424	2,424 (2,424)	-	-	3,067	3,067	3,067	3,067 (3,067)	-	-	2,541
- 기획운영 및 지방 중기지원	845	845	845 (845)	-	-	852	852	852	852 (852)	-	-	821
- 회관 보수	-	-	-	-	-	-	-	-	-	-	-	1,000
- 인건·경상비	5,129	5,129	5,129 (5,129)	-	-	4,704	4,704	4,704	4,704 (4,704)	-	-	5,152
• 협동조합 활성화	3,901	3,901	3,901 (3,901)	-	-	3,952	3,952	3,952	3,952(3, 952)	-	-	5,682
- 협동조합 정책개발	395	395	395 (395)	-	-	395	395	395	395 (395)	-	-	395
- 협동조합 역량강화	706	706	706 (706)	-	-	706	706	706	706 (706)	-	-	436
-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2,800	2,800	2,800 (2,800)	-	-	2,851	2,851	2,851	2,851 (2,851)	-	-	4,851
○ 비목별 분류 (합계)	12,299	12,299	12,299 (12,299)	-	-	12,575	12,575	12,575	12,575 (12,575)	-	-	15,196
• 민간경상보조 (320-01)	12,299	12,299	12,299 (12,299)	-	-	12,575	12,575	12,575	12,575 (12,575)	-	-	15,196

부록 3: 조합법인과 중소기업의 비교

<부표 6> 중소기업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2018)

(단위: 억원)

과세표준	중소기업(A)	조합법인(B)	B/A(배)
0원 미만	10.3	34.3	3.3
0~2억원	16.9	22.2	1.3
2억~20억원	81.7	126.7	1.6
20억~200억원	337.9	548.6	1.6
200억원 초과	1145.1	7,214.8	6.3
합계	25.3	144.8	5.7

<부표 7> 중소기업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2018)

(단위: %)

과세표준	중소기업(A)	조합법인(B)	B/A(배)
0원 미만	-	-	-
0~2억원	8.3	8.9	1.1
2억~20억원	12.6	8.9	0.7
20억~200억원	16.3	10.7	0.7
200억원 초과	17.9	11.7	0.7
합계	13.5	10.0	0.7

